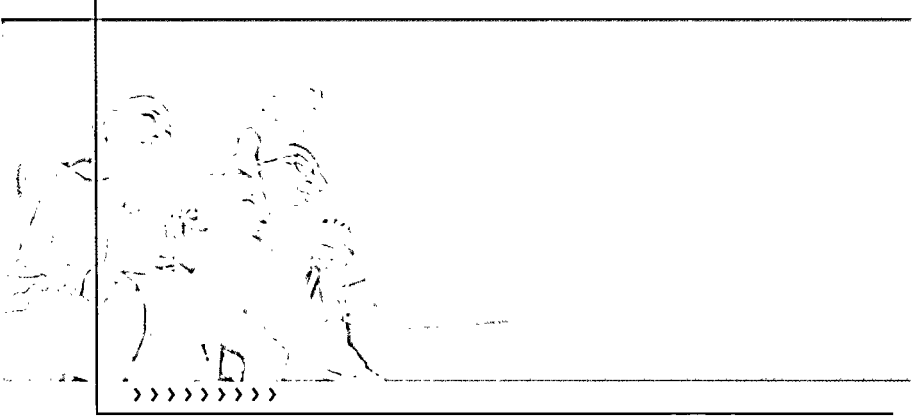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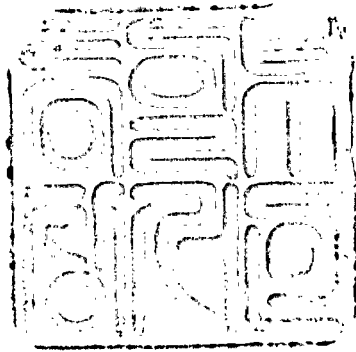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궁금증 풀어보기



새 삶을 위한 생활안내



통일부 | 하나원
MINISTRY OF UNIFICATION



목 차

일반성 - 복지생활

1. 교통수단 이용	06
2. 통신에 관한 내용과 활용방법	13
3. 은행 이용	16
4. 도량형	17
5. 전기요금 등 공과금	18
6. 시장과 가격	19
7. 이용과 미용	21
8. 외국 출입	23
9. 법률	25

취미성 - 직업 및 교육

1. 직업훈련	28
2. 직업세계 및 취업	30
3. 자격증	33
4. 직장생활 및 임금	34
5. 진학 및 교육	35

세미성 - 정착지원제도

1. 국민기초생활수급비 혜택	42
2. 가족관계등록	44
3. 혼인(국제결혼 포함)	45
4. 정착지원금	47
5. 주택과 거주지	50
6. 수료 후 해야 할 일	55
7. 행정기관의 기능	57

혜택성 - 의료복지

1. 의료지원 혜택 및 주의사항	60
2. 건강진단 및 기타	63

찾아보기

찾아보기

- <부록1>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연락처
- <부록2> 거주지보호담당관 현황
- <부록3> 취업보호담당관 현황
- <부록4>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부록5> 대한민국전도
- <부록6> 지하철 노선도

**북한이탈주민의
궁금증 풀어보기**



새 삶을 위한 생활안내

| 유의사항 |

이 책의 내용은 2010년 3월 현재의 관련 법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책자 발간 이후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당 사회생활



1. 교통수단 이용
2. 통신에 관한 내용과 활용 방법
3. 은행 이용
4. 도량형
5. 전기요금 등 공과금
6. 시장과 가격
7. 이용과 미용
8. 외국출입
9. 법률

교통수단 이용

「지하철은 어떻게 타며 요금은 얼마 정도 얼마나까?」

지하철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대중 교통수단이며, 대도시인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은 서울 지하철¹⁾과 인천선, 천안선, 분당선, 중앙선, 공항철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서울과 경기도·충청남도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아타는 것이 복잡하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매우 혼잡하므로 다소 여유로운 낮 시간을 이용해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용차·택시·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도로가 혼잡할 경우 운행 시간을 지키기가 곤란한 데 반해, 지하철은 정해진 운행 시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킬 수 있기에 바쁜 도시인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매표소 혹은 자동발매기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여 자동개폐기에 승차권을 접촉하고 통과한 다음,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인한 후 승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탈 때 마다 승차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개의 노선이 교차해 있는 역에서는 지하철역과 차량 내에 있는 지하철 노선도를 참고하여 갈아타는 곳을 잘 확인한 다음 이용해야 하며, 이 때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반드시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승차요금은 10Km까지 성인 1000원, 어린이 500원이며,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성인 900원, 학생·청소년 720²⁾원, 어린이 450원으로 할인 가격이 적용됩니다³⁾.

1) 1-9호선까지 운영
2) 학생·청소년이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할인 없음.
3)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의 지역은 지역별 요금제가 운영되므로 교통비에 차이 있음.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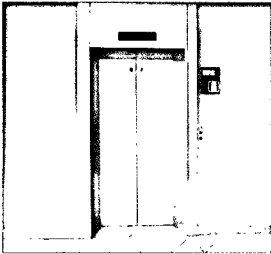
- 무임승차권(돈을 내지 않고 차를 탄) : 경로 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국가에 유익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배려로 북한에서 말하는 공로자와 비슷함) 등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할인⁴⁾ 승차권 : 학생의 경우 청소년은 20%, 초등학생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구간을 초과하거나 개표 후 3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추가로 운임을 더 내야합니다.
-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승차구간 운임의 30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자동 계단) :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이나 공항, 기차역, 백화점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급한 사람이 왼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른쪽에 타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두 줄서기를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엘리베이터(승강기) : 고층 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상하로 옮기는 장치로 5층 이상 건물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하철 역에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젊고 · 건강한 사람들은 노약자를 위해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뛰거나 큰소리로 말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4) 할인이란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싸게 한다는 뜻(일정 금액에서 일부를 깎아 주는 것)

『 배 버스 어떻게 타며 요금은 얼마 얼마 알아야 할까? 』

버스에는 고속버스, 직행버스, 관내운행버스(시내버스) 등이 있으며 요금은 거리, 이용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현금 이외에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속버스: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장거리 여행 시 이용
- 직행버스: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단거리 여행 시 이용
- 관내운행버스(시내버스): 도심권이나 그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이 있으며 관내운행 버스요금의 경우는 지역 · 버스 종류 · 이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 간선버스: 주요 지점을 가급적 직선으로 연결하여 빠른 운행을 목적으로 함.
 - 지선버스: 여러 지점을 운행함으로써 간선 및 지하철과의 환승을 목적으로 함.
 - 순환버스: 특정지역에서만 순환운행
 - 마을버스: 일반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 오르내리기 힘든 고지대와 일반버스 정류장 · 지하철역까지를 연계하는 미니버스
 - 광역버스: 서울 외곽지역과 서울 시내를 빠르게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내 운행 버스의 경우에는 보통 앞문으로 승차하여 뒷문으로 하차를 합니다. 정류장마다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므로 하차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오면 미리 벨을 눌러 하차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버스 요금

(2008년 12월 현재)

구분		교통카드이용시	현금이용시
간선버스(파랑) 지선버스(초록)	일반인	900원	1,000원
	청소년	720원	1,000원
	초등생	450원	450원
순환버스(노랑)	일반인	700원	800원
	청소년	560원	800원
	초등생	350원	350원

서울특별시 버스 요금

(2008년 12월 현재)

구분		교통카드이용시	현금이용시
마을버스(초록)	일반인	600원	700원
	청소년	480원	550원
	초등생	300원	350원
광역버스(빨강)	일반인	1,700원	1,800원
	청소년	1,360원	1,800원
	초등생	1,200원	1,200원



지선버스(초록)



마을버스(초록)



광역버스(빨강)

요금적용 방법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환승 시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됩니다.

- 서울시내버스(파랑, 초록, 노랑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을 갈아탄 통합거리가 10km 이내는 기본요금만 나오며, 환승은 무료입니다.
- 갈아탄 통합거리가 10km를 초과할 경우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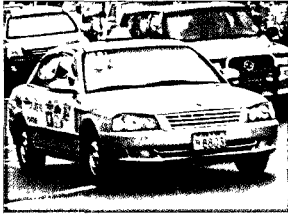
▷현금(1회권)을 사용하면 환승 시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 현금승차 시에는 교통카드 사용 시보다 100원 비쌉니다.

▷환승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탈 때와 내릴 때에 언제나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합니다.

-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 후 30분 안에 갈아탈 때만 환승요금이 적용됩니다.
-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여 마지막으로 갈아탄 버스에서 내릴 때에도 반드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환승할인이 됩니다.
- 빨강버스(광역노선)도 환승 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30km 이내: 기본요금, 30~40km: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3) 택시 향락에 따라 택시요금에 따른 차이



일반택시



모범택시

택시는 문 앞에까지 편안하고 신속하게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일반택시와 모범택시가 있습니다.

택시에는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승차하면 조금만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말하고,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2km 정도입니다.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서울이 2,400원이며 지역에 따라 100 ~ 2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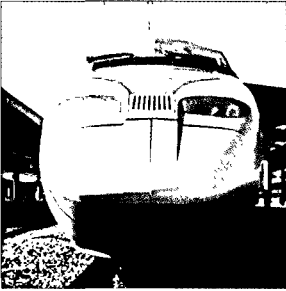
모범택시는 보통 3000cc 이상의 최고급 승용차로서 기본요금 자체도 훨씬 더 비쌉니다.

택시의 요금은 거리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납니다. 택시요금은 미터기가 거리와 시간을 환산하여 가리키는 대로 계산하는데, 도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할증요금(보통 40~60%)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는 심야 할증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택시는 일반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기에는 다소 비싼 편이지만 제주도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는 신혼부부들이 하루, 이틀씩 전세 내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요금은 하루에 8~10만원 정도 하는데 택시 기사가 사진도 찍어주고 그 지역의 명소를 안내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한편, 전화로 불러서 타는 택시는 콜택시(call taxi)라고 합니다. 단, 콜택시를 부르는 비용으로 1,000원이 요금에 추가됩니다. 짐이 다소 많은 경우에는 콜밴(call van)을 불러 이용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4. 기차의 종류와 요금에 관하여



기차 노선은 경부선(서울 ~ 부산), 호남선(서울 ~ 목포) 등 16개의 노선이 있어서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객기차는 등급에 따라 무궁화호, 새마을호, 고속철도(KTX)가 있고 요금도 각각 다릅니다.

2004년부터 운행하고 있는 고속철도는 최고 시속 330km로 서울과 부산을 3시간 만에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기차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새마을이나 무궁화에 비해 다소 비싼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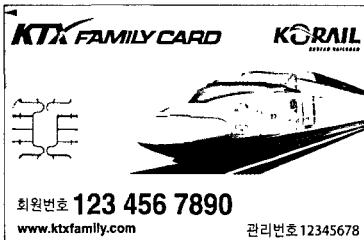
▷가격비교 : KTX(가장 비쌌) > 새마을 > 무궁화

▷속도비교 : KTX(가장 빠름) > 새마을 > 무궁화

자세한 비용이나 기타 문의 사항을 1588-7788, 1544-7788(칙칙폭폭)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5. '기차를 탈 때 편리한 생활에 앞을 개척'

기차의 승차권은 인터넷(www.korail.com/www.qubi.com), 철도고객센터(지역번호 없이 1544-8545, 1544-7788), 기차역, 여행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기차를 자주 이용하는 분은 철도회원으로 가입하면 기차요금을 5% 적립 가능하며, 적



립된 포인트 점수(₩ 20번에서 설명됨)가 쌓이게 되면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기차표를 구입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회원 전용 창구는 청량리역이나 서울역 등 주요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6. 비행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우리나라에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15개 공항이 있으며 2004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이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항공사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좋고,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내선은 출발 1시간 전까지, 국제선은 2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한국 국적의 국제 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으며,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한성항공 등도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 대부분은 국내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2009년 3월 제주항공에서 일본 정기노선 운항을 시작하는 등 인근 해외지역 노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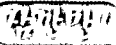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점

-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린이, 노약자,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버스·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노약자석>에는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 모든 버스, 기차, 비행기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통신에 관한 내용과 활용방법

⑦ 휴대전화 사용요금에 영향을 때도 신용 불량자가 될까요?

신용 불량자란 3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금전의 지급이나 납입 따위를 기한이 지나도록 지체함)할 경우에 지정되기에, 휴대폰 사용요금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연체되었다면 신용불량자에 해당됩니다.



휴대폰 사용시 지켜야 할 예절

1. 병원에서 사용금지
2. 벨 소리를 줄여서 사용
3. 극장, 지하철 등에서는 꺼두거나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환해 둘 것
4. 운전 중 사용금지
5. 통화할 때는 조용히 그리고 용건만 간단히

참고

휴대폰 요금은 일반전화 요금보다 훨씬 비쌉니다.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나 공휴일 시간에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료가 대부분 상대적으로 싸입니다. 일반전화 요금 문의나 전화신청은 국번없이 10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⑧ 신문매대 통신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광고와 실제로 어떻게 다르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광고는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매매나 다단계 판매(되거리 장사와 비슷하나 혼자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물건을 파는 방식)일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하는 구인광고의 경우 노동부에 문의(02-2110-2114)를 하여 업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팸 메일⁶⁾(spam mail)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무료대출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으나 사채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인 사이트(인터넷)에 대한 안내도 많은데, 중독성이 강하여 한번 빠지게 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 스팸메일이란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많은 양이 배포되는 광고성 전자 메일(전자우편)을 말함.

경우는 인터넷 메일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소비자가 스팸광고 수신거부(싫다는 뜻을 표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팸 광고를 받은 경우는 스팸메일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02-2110-4934)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인터넷은 유연하며 일상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은 통신선으로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들이 연결된 망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편리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자우편)로는 편지나 자료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보낼 수 있습니다. 각종 사이트에서는 행정기관이나 회사, 단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물건을 사는 것, 열차나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것, 돈을 다른 은행계좌로 보내는 것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은 또한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나 개인적 관심사에 대해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10) 남한의 TV는 북한의 TV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의 TV는 당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한의 TV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에 신속성, 오락성, 광고성 등이 강합니다.

남한의 TV에는 뉴스, 다큐멘터리(기록영화) 등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정치·사회 문제를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내용도 있고, 드라마·만화영화처럼 이야기를 그럴 듯 하게 꾸며서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가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도 만들어 지는데, 이들 남한 TV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시청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TV 앞에 머물게 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률에 따라 광고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는 기획자(제작한 사람)의 의도,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남한에서는 경제적·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해서 시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행 이용

❖ 갑자기 돈을 필요해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행 업무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입니다. 그 이후 시간에 돈을 찾거나 송금을 하고자 할 때는 24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인출 및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⁷⁾. 저금통장이나 신용카드·현금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나, 때로는 카드 사용만 가능한 지급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계좌 비밀번호는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저금통장에 적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비밀번호를 노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 주의 하십시오.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기) 사용하는 방법



- 1)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립니다. (*줄을 설 때는 앞사람 바로 뒤에 붙어 서지 않도록 합니다.)
- 2) 자기순서가 되면 기계화면을 보고 화면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작합니다.
 - ① 거래가 시작되면 화면에 나온 은행 업무(현금인출, 현금입금, 계좌이체 등)를 손으로 접촉하거나 번호를 눌러 선택합니다.
 - ② 카드를 기계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 ③ 입금액, 지급액 등 자신이 이용하려는 은행 업무를 화면의 지시 내용에 따라 조작합니다.
- ④ 거래 종료 후 반드시 카드와 거래명세표를 챙기고 첫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첫 화면으로 바뀌지 않았을 경우 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3) 거래를 마친 후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종이분쇄기를 이용하여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합니다.

❖ 잠각금에 들어오는 통장을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금통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서 통장을 발급받았던 은행의 지점 어디서든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정의 재발급 수수료(2,000원

정도)를 내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어 버렸을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도량형

❷ 남한에서의 1평은 어느 정도입니까?

남한과 북한의 도량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집의 넓이를 말할 때 북한에서의 한 평은 3.24㎡이고, 남한의 한 평은 3.3㎡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말하는 한 평보다 남한에서 말하는 한 평이 조금 더 넓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1㎡를 1평이라고 합니다.

❸ 1홉, 1말, 1관 등의 단위는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품목의 양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콩이나 쌀, 고기, 고추 등의 품목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 한 근은 600g이고, 과일 한 근은 400g(또는 375g)입니다.

- 1홉 - 1/10되
- 1말 - 10되
- 1관 - 3.75g : 고구마, 감자, 과일의 무게를 잴 때 쓰임
- 1돈 - 3.75g : 금, 은 등의 귀금속 등에 쓰임
- 1냥 - 10돈 : 귀금속 또는 한약재 등에 쓰임
- 1근 - 고기, 야채 등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품목에 따라 '근' 무게가 다름
 고기 600g/ 딸기 400g/ 시금치 150g/ 미나리 200g/ 고추 300g
 * 대형마트에서는 '근'이 'g'으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에서는 여전히 '근'이 통용되고 있음

참고사항 표준 도량형에 대해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비법정 도량형의 사용을 금지하고 표준 도량형인 길이와 넓이에는 미터(m, m²)법과 무게에는 그램(g)을 적극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준 도량형을 표기하고 옆에 비표준도량형을 표기하는 즉, 병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 등에서는 관습적으로 예전의 도량형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

15) 중구에서는 주택의 전기·물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한구에서와 달리 추가료를 받던 일대 아파트 단지였으나 그리고 아파트 입주 시에 계산을 하는 시안”

각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이라고도 함) 직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검침⁸⁾을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한 일정한 양 이하의 전기에 대해서는 저렴한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 양을 초과해서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료가 더욱 비싸게 부과되어 많은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스는 매월 초에 지역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본인이 집안의 검침기를 보고 사용량을 현관문 밖에 붙여놓은 용지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가스공사 직원이 이를 보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합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 안에 가스·전기·수도 요금이 함께 계산되어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요금은 서울·경기 등 지역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산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 : 관리비

집세 외에 또 내는 것이 있다면서요?

집세는 집을 얻는데 필요한 보증금과 월세를 말합니다. 보증금은 미리 일정금액을 예치해 놓은 돈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돌려줍니다. 월세는 매달 임대주택에 사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으로 만기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세를 내고 또 내는 것이란 관리비를 뜻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금(예 : 엘리베이터 수선비, 아파트 전체 전구 교체, 청소비, 기타 시설의 교체 비용, 경비원의 월급, 공동 전기요금, 공동 수도요금 등)을 모두 합하여 일정비율로 세대별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과 가격

16. 물건을 싸게 사려면 어디에 가면 됩니까?

대체적으로 할인마트⁹⁾(예 : 이마트(E-mart), 홈플러스 등)를 이용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산물, 농산물에 따라서 할인마트, 시장, 백화점 등의 가격이 다소 차이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살 때는 여러 곳을 다녀보고 가격을 비교해 본 다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백화점의 경우는 세일기간¹⁰⁾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중고품 거래시장, 농축수산물 직거래 시장에 가면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검색 창에 '가격비교' 또는 '평 가사이트'라고 치고 난 다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 가장 싼 곳을 직접 알아보고 난 후 구입하기도 합니다.

17.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알려달라던 특별 요청 부탁합니다.

물건에 대한 가격표시는 포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는 정찰제¹¹⁾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장으로서 북한에서의 장마당과 비슷)의 경우 물건값을 깎기도 합니다.

18. 주인에게는 싸게 흥정을 했는데 남향에게는 왜 물건값을 깎아 주지 않는 겁니까?

북한이탈주민이라서 깎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에 따라 사장(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는 곳도 있고, 종업원이 장사를 하는 곳도 있는데,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는 곳에선 주인의 성격에 따라 조금은 깎아 줄 수도 있겠으나 보통 남한의 물건가격은 정찰제로 되어 있어 흥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재래시장에선 흥정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특히 백화점 등에서 정찰제이고 판매 사원의 재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흥정이 어렵습니다.

9) 할인마트란 일정한 값보다 싸게 파는 가게를 뜻함.

10) 세일기간이란 값을 낮추어서 파는 일정한 기간을 뜻함.

11) 상품에 가격을 고시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는 제도

19) 할인쿠폰에 뭐죠?

쿠폰(coupon)이란, 광고나 상품 등에 첨부된 우대권, 경품권 등을 말합니다. 무료로 시식을 할 수 있는 무료쿠폰도 있고 상품 가격의 몇 %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 광고지, 슈퍼 등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모아 두었다가 할인기간 내에 사용하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포인트 점수는 무엇일까요?

각 회사에서는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회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비자의 경우도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회원가입자에게는 포인트 점수를 주어서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가격 등에 따른 포인트 점수를 누적시킨 후 다음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을 해주거나, 다른 물건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판매자가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포인트를 누적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니,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용과 미용

❶ 이발사의 자야와 가락에 따른 살의 자야는 있는지요?

일반 미용실은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남자 전용 미용실도 있습니다.

일반 미용실에서 커트 비용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미용실의 수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유명 헤어디자이너(미용사)들이 머리를 손질해 줄 때는 요금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남자전용 미장원(예 : 블루클럽)에서의 이발요금은 6,000원 정도 하고, 그 밖에도 대중목욕탕(사우나 등)내에 있는 이발소(보통 1만원 정도함)에서 머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❷ 대중목욕탕에 갈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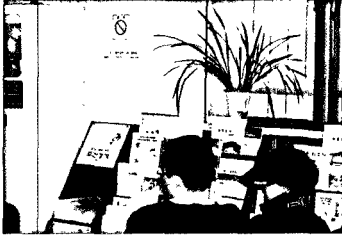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피부병 등을 앓고 있다면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목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 1) 샤워기로 머리를 먼저 감습니다.
- 2) 비누칠을 한 목욕수건 등으로 몸을 깨끗이 닦습니다.
- 3) 온탕에 들어가서 10~15분 정도 몸을 담그면 좋습니다. 이때 탕 안에서 때를 미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4) 탕에서 나와 때를 밀고 깨끗하게 닦습니다.

대중목욕탕 이용 뿐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정숙은 기본이며,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은 일절 삼가는 것이 공중예절입니다. 이용료는 목욕탕에 따라 다른데 보통 4000~6000원 입니다

남한의 흡연예절



담배를 피울 때는 우선 흡연 장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03년 7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원, 어린이 집, 학교, 버스·기차 등의 대중교통시설, 축구장 등 실의 체육시설, 사무실·화장실·승강기 등의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300만원, 2만~3만원씩의 과태료(벌금)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담배를 피울 때의 유의사항입니다.



- 1) 상대를 만나자마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 2) 손윗사람¹²⁾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한 후 흡연토록 해야겠습니다.
- 3) 기차역이나 구내식당 등 혼잡한 곳, 상대방이 식사를 끝내지 않았을 때, 재떨이가 없는 응접실, 견고 있을 때, 상사가 꾸지람을 할 때나 어떤 안전이 있어서 설명하고 있을 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4) 담배를 피울 때는 남의 얼굴에 연기가 가지 않게 주의 해야 합니다.

외국 출입

23.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에 출입할 수 있는 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외국 여행’이 가능한가요?

여권은 각 나라가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증명서입니다.

북한이탈주민도 기본적으로 일반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와 규정을 적용합니다. 외국 출입도,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민의 경우,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허용해 주어야 갈 수 있습니다.

24. 외국에 갈 때 발급받는 여권은 어떤 종류로 받을까? 비용은 어느 정도 일까요?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때는 여권발급신청서 1매, 신분증, 여권용사진 1매를 소지하시고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시·군·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10년, 5년, 5년 미만의 3종류로 나누어지며, 발급수수료는 각각 55,000원·47,000원·15,000원입니다.

한글 맞춤법 여권용 사진 규정 안내

1.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한다.
2.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이어야 한다.
3.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부적합하다.
4. 귀 부분이 노출되어야 하고, 가능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한다.

25. 외국을 방문할 때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을 방문할 때는 사증(비자, VISA)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자는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여권 상에 발급됩니다.

비자 신청은 그 나라의 한국주재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합니다. 그러나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면 비자 없이도 일정 기간 그 나라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몇몇 나라에 갈 때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발급한 비자(VISA)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방문의 경우 현재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여행이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비자면제의 조건은 단기간 친지방문이나 여행에 그치므로 취업, 유학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6. 정착 후 3~4년에 지나 일정한 자금이 축적된 후에 중국에 진출하여 한식점 운영 등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은 일반 한국인과 같이 모두 가능하지만 중국에서의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등이 있는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국 당국이 신변안전과 기타 위협요인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27. 외국에 나가서 독립어를 할 경우에도 정착금이 나오는지, 본인에게 없어도 받을 수 있는지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착금이 지급되는 기간에 외국으로 이주를 한다면 정착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착금 수령 당사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와 가족 구성원 일부가 나가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원 교육기획과(전화 : 031-670-9350)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8. 일본에 진척이 있는데 함께 알람세 발하고 영어로 가능할까요?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며,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 법무성 입국 관리국의 '체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내국인의 실업률 증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으로 외국 인력 그 중에서도 단순인력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분야는 전문기술 분야와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기능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 입국하여 돈을 버는 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29. 밤낮무 법치주의¹³⁾라고 들었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에 개성만에 현실서를 어겨주는 형유는 어떤 것에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서를 어겨주어 어떤 법치사람과 똑같은 제재(제벌)를 받는지요?

2003년 10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범규위반¹⁴⁾은 교통법규 위반(41%), 폭력(34%) 등이 압도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행동)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발적으로(우연히, 충동적으로) 폭력사건을 일으키거나 교통법을 잘 모른다거나 음주단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단속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말하면 용서해주리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위반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봐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남한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매우 엄하게 처벌합니다.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 기사¹⁵⁾ (1만 5천원 정도)를 부르는 것이 낮습니다.

13) 법치주의란 법으로써 사회질서를 다스리는 제도.

14) 법규 위반이란 법과 규정, 질서를 어기는 것을 뜻함.

15) 대리기사란 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는 사람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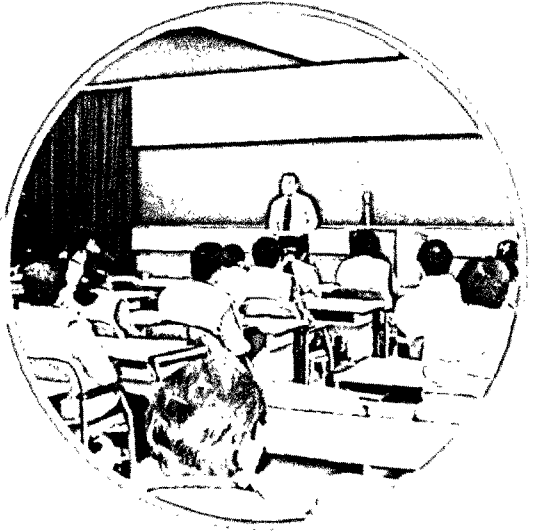
30)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까? 여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곳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전국 14개 본부 및 지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국 지부 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문의처

단체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3	02-3476-4008
서울지방법변호사회	02-3476-6000	02-3476-8091
인천지방법변호사회	032-861-2170	032-861-2171
수원지방법변호사회	031-216-0646	031-212-6363
춘천지방법변호사회	033-243-8321	033-243-8321
청주지방법변호사회	043-284-9683	043-285-9683
대전지방법변호사회	042-472-3358	042-472-3359
대구지방법변호사회	053-753-1900	053-751-6006
부산지방법변호사회	051-506-8500	051-506-8510
울산지방법변호사회	052-267-6633	052-267-6637
창원지방법변호사회	055-266-0606	055-266-0607
광주지방법변호사회	062-222-0430	062-222-1305
전주지방법변호사회	063-252-7710	063-251-7568
제주지방법변호사회	064-751-1402	064-725-1117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2-591-3823	02-591-3826

두마당 - 직업 및 교육



1. 직업훈련
2. 직업세계 및 취업
3. 자격증
4. 직장생활 및 임금
5. 진학 및 교육

직업훈련

11) 자신에 살고 있는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에 가서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요? 직업훈련수당은 주어지나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받으면 해당요건에 따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시설) 학원이나 교육은 직업훈련수당을 주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12) 하반기 수료 후에 컴퓨터를 더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각 지역의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학원, 대학의 부설 교육원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직업훈련으로 배우려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직업훈련 신청을 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울 때 앞으로의 희망 직업을 고려하여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3) 하반기 수료 후 요리를 배우고자 할때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받으려면 알뜰을 얼마까지 주는지요?

요리 자격증에는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복어 조리기능사가 있습니다.

요리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여 받는 최초 임금은 음식점의 규모(크기),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요리는는 기술과 경력의 정도에 따라 매우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취업을 하고도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게 희망하는 직업훈련을 신청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하반기 수료 후 취업 전 5년 이내 3회까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업훈련이라 함은 실업자 직업훈련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한 상태는 실업자가 아니므로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한 상태에는 재직자 직업훈련이 있으므로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직장을 나오게 된다면 실직자 직업훈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합니다. 말하자면 평생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35.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직업훈련수당은 교통비, 식비, 기숙사비,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우선직종수당, 취업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직업훈련직종과 부양가족 등의 해당여부에 따라 약 20만원~40만원 정도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직업훈련 장려금은 직업훈련을 500시간 이상 수료하면 120만원을 500시간~1,220시간까지는 120시간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훈련 수료 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외 1년이상과정, 우선선정직종, 폴리텍학위과정의 경우에도 추가로 200만원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착장려금 지급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알아보고야 하나?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예산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직업훈련이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배울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 먼저 자신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정보망(www.work.go.kr)이나 고용지원센터의 취업보호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37. 낮에는 직업훈련을 받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나?

취업한 상태에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정식 취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직업훈련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아르바이트 수입도 일정액 이상이 되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8.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및 취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장려금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일까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기간(최대3년)동안 임금의 1/2(최대 7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동일직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1년 단위로 총3회에 걸쳐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정착장려금 지급기준표 참고).

직업세계 및 취업

39. 알잡을 많이 받는 직업에 맞을까요?

오늘날의 직업세계는 평생직업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생직장이 존재하지요. 즉 한 직장에서 평생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평생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취업을 했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흔히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사람도 많지요. 경쟁력이 강하다는 이야기지요. 지방은 일자리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적고요. 우리나라는 전국에 국가공업·산업단지, 지방공업·산업단지가 고루 분포하여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흥미를 잘 파악하여 일자리를 잡는다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40. 꼭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취직하여야만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취업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취업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근무	200
	1년차	550
	2년차	600
	3년차	650

❖ 박이재가 (이)라 가장인 경우에 취업에 실패한 경우 직장에 있을때까?

남한의 구직자들도 40대 이상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40대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대부분 재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이는 40대 이상인 북한이탈주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적합직종으로 조리사, 제과제빵사, 주방보조원, 캐드 설계원, 피부·발관리사, 간병인, 도배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상품판매원, 경리 사무원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래 노동부(워크넷) 조사에 의하며, 중장년의 경우는 제조관련 단순노무자, 경비원, 건물설비 관리원, 건설 단순노무자, 주차장 관리원, 용접원, 중장비 운전원, 공작기계 조작용, 자동차 정비원, 전기(내선·외선)원, 자동차 운전원 등이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 포인트

1)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당당하라!

동료들이 편하게 하는 말도 무시했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감정을 먼저 내세우지 마라.

작업장에서 똑같이 관리자에게 혼나고도 자신이 더 혼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2) 높은 사람 있을 때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북한이탈주민들은 관리자들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누가 보든 그렇지 않은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라.

3) 먼저 베풀고, 남이 주면 고맙게 기꺼이 받아라!

남에게 받는 것도 싫어하며, 주는 것도 아까워하고 싫어한다고 한다.

동료끼리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밥도 같이 먹고, 사주기도 하고, 남이 사주면 고맙게 먹기도 하라.

4) 관리자의 지시에 일단 응하라!

관리자의 작업지시에 말대꾸를 하여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작업지시는 일단 응하고, 의견은 이후에 공손하게 제시한다.

5) 모르는 것은 당당히 물어보라!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며, 단지 모르는 내가 불편할 뿐이다.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라, 그래서 불편함에서 벗어나라. 상대는 의외로 친절하다. 그리고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12 공무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무원은 크게 국가기관에 소속되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개채용시험과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특별채용시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으나 지방직 공무원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령제한 규정이 있어 일정 연령이 넘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20세 이상(9급 시험은 18세)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상한 연령은 대부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사실은 공무원 시험의 종류가 아주 많아서 시험을 실시하는 시행처에 따라 응시자격이 다르므로 응시하는 시험의 공고문을 항상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격증

43 직업전문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여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입니다. 직업훈련은 주간반, 야간반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어느 반에서 공부하든지 직업훈련 도중 또는 훈련 이수 후 훈련받은 분야의 기술 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직업전문학교의 기능사양성과정(1년 과정)을 학습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등의 혜택도 있으니 잘 확인하여 직업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4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떻게 어디서 취업을 시켜주는지 알고 싶습니라

직업훈련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경우 취업의 가능성도 한결 높아집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집단 무리배치와는 달리 남한에서는 국가가 일자리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여러 방법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직업학교에는 관련 직종(직업종류) 분야에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받을 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면 무료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고 취업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45 자격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월 임금의 차이는 어떤지요?

자격증은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할 때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한 것입니다. 특정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여부에 따른 임금 차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자격증 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국가자격증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격 취득 시 반드시 어느 기관의 무슨 자격증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6) 자격증을 취득하면 남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그만큼 취업이 쉬워지며 대우도 좋아집니다. 자격증만으로 남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직업능력의 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및 임금

47) 남한의 직장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에 대한 애착과 열정, 일을 하는 능력, 직장 내의 대인관계, 성실성, 책임감 등입니다.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므로 일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회사도 조직이므로 동료나 상사 등과 다툼 없이 잘 지내는 대인관계, 성실히 생활하는 모습,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48) 회사에 취직하여 밤에 일하고 밤에 일을 해야된 월급을 어떻게 주나요?

남한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근로(연장작업)를 하면 기본임금의 50%를 가산임금(기본 노임에 더 주는 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라 하면 정해진 근로시간(1일 8시간)이외에 추가로 일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22:00~06:00)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50%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9)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기초생활비까지 제공해주고도 들었습니까
아르바이트의 수준은 무엇일까요?**

아르바이트라고 말하는 것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부업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 4시간, 주 20시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소득신고가 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의무도 행하여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¹⁶⁾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생계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소득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의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 취업을 했는데 남한사람들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불리는 등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한의 직장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깔보지는 않습니다. 남한사람도 성실히 일하지 않거나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등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예절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배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생활은 결국 직장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즉,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 직장에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에 관계 없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학 및 교육

51) 취직 후 이산에 대학을 만나려고 할때 어떤 경우도 취업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학에 입학한 후 남한 학생들과 경쟁하며 정상적으로 졸업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업과 대학공부를 같이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할지 단단히 결심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¹⁶⁾ 여기서 일정 금액이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액수를 뜻함.

대학 교육지원 개요

대학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제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 • 교육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5세 미만 • 거주지보호기간 중(5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후 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 8학기 • 의학 계통 : 1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이 연속 2회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 기술대학 • 기타 학력인정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제한 없음 • 거주지보호기간 중(5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후 5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대학 : 4학기 • 3년제 대학 : 6학기 	

52. 남한에서 자녀가 생길때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남한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는 남한사람과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서 공납금 등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그 이후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53. 남한의 학교 교육 의 교육방식은 어떠한지 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의무교육¹⁷⁾인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진학하는 고등학교(3년), 대학교(2~4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외에 추가로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가정방문식 교육과 학원 수강식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가정방문식 교육

영어, 수학, 과학, 국어, 한문 등 개별 교과목 또는 전 과목에 대해 학습지를 미리 풀고 방문교사가 주 1회 정도 방문하여 확인과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어 평균 5분에서 15분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학습지로는 눈높이, 대교, 윤선생, 구몬, 웅진씽크빅 등이 있으며, 월평균 교육비는 초등과정 9~12만원, 예비중학과정 12~13만원, 중학과정은 12~15만원 정도입니다.

2) 학원수강식

학교 외 보충학습을 보습이라고 하며 보통 학교 외 학원을 보습학원이라 부름

니다. 영어, 수학, 논술(국어), 과학, 사회 등 학년과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하며, 보통 3과목을 묶어서 주 5일 2시간씩 교육을 받는 경우 초등학생은 대략 월 2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보습학원 외에도 주산, 속셈, 피아노, 미술, 바둑, 태권도 등을 교육하는 학원도 있으며 종류에 따라 교육비의 차이는 있으나 피아노의 경우 기초 수준인 경우 7~1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필요합니다.

3) 기타

맞벌이¹⁸⁾를 하는 가정 등 학교 이후 아이를 돌봐줄 어른이 없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숙제나 부족한 교과목을 돕고, 정서적인 외로움 등을 풀어주는 곳으로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방과 후 교실이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 교육비는 6만원 정도입니다.

12. 북한과 북한의 대학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대학	남한의 대학
대학 소속의 당 본부에서 진학자 결정, 예비고사	자유롭게 희망대학, 희망학과 지망, 대입수능고사
90%이상 기숙사 생활	기숙사, 하숙, 자취, 자가 등 자유로운 선택
남자 : 교복, 교모 여자 : 검정 치마, 흰색 저고리	자율복장
교과목은 대부분 필수 교과목	매학기 시작 전에 듣고 싶은 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
학년별 교실 · 좌석 지정	수강 신청 과목에 따라 강의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하며, 다른 학년 · 학과의 학생들과도 수강함
다양한 교내 활동 불가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가 가능 '개강파티', 'MT', '축제' 등으로 다양한 체험 가능
교내 복지 시설 빈약	학습지원센터 등에서 부족한 영어 등 학력지원, 학생생활상담소에서 애로사항 상담 가능 등
졸업 후 직장 배치	졸업을 하더라도 직업은 스스로 구해야 함

13.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됩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따라서 대학진학

18) 맞벌이란 부부가 다 직업을 가지고 출근하는 것을 뜻함.

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인정받았거나,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진학을 희망한다면 대학마다 입시전형이 다르므로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남북한 학제 비교

북한 소학년(4년) 중학교(6년) 대학교(2~4년)

남한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대학교(2~4년)

[북한이탈주민 대상 대학별 입학전형]

- 일반대학 : 수능시험 없이 특별전형(국어, 영어, 수학, 논술, 면접, 서류심사 등)을 통해 정원의 선발
 - * [참고] 서울대학교 : 수능시험(내부경쟁) 및 면접을 통해 정원의 선발
- 전문대학 등 : 수능시험 없이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을 통해 선발

참고 : 교육비 지원

1) 학교를 다니는데 전혀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교육비가 없고, 고등학교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학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면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우 입학·편입학 당시 만35세 미만인 경우 국립대학은 학비가 면제되고, 사립대학은 국가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50%는 각 학교 규정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 되게 됩니다. 다만 거주지보호기간(5년) 또는 대학진학 자격을 획득(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입 검정고시 합격)한지 5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대학, 기술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폴리텍대학 그밖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입학 시 연령과 무관하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입학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학비지원 관련 규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대학진학을 결정하기 이전에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하나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대학교를 옮겨도 학비가 계속 지원되나요?

대학교 학비지원은 한 번만 지원됩니다. 즉 ○○대학교를 1년 간 다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음해에 △△대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되면 △△대학교 1학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2학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다만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2회 연속 70점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 다음 학기의 학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어와 영어능력 부족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매 학기마다 20 ~ 30%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 본인의 학업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탁당 정착지원제도



1. 국민기초생활수급비 혜택
2. 가족관계등록
3. 혼인(국제결혼 포함)
4. 정착지원금
5. 주택과 거주지
6. 수료 후 해야할 일
7. 행정기관의 기능

국민기초생활수급비¹⁹⁾ 혜택

56. 거주지 배정 받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이사를 하게 되면 기초 생활 수급비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은 거주지를 근거로 지급되는 제도로 거주지에서 이유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기초생활 수급이 중단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 옮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7. 어떤 직업의 경우 기초생활비를 받게 못하는지요?

직업에 따라 기초생활비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

▷ 생계급여(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주는 돈) :

매년 정부에서 결정하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만 지원하는 현금으로 다음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 수준

▷ 2010년도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인정액	504,344 (858,747)	858,747 (1,110,919)	1,110,919 (1,363,091)	1,363,091 (1,615,263)	1,615,263 (1,867,435)	가구원 수 1인 증가 시마다 252,172원씩 가산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

▷ 2010년도 현금급여 지급기준(최고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현금급여 월액	422,180 (718,846)	718,846 (1,110,919)	929,936 (1,141,026)	1,141,026 (1,352,116)	1,352,116 (1,563,206)	1,563,206 (1,774,296)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 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적용되는 지급기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급권자 선정 특례기준 차등 적용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현금급여 기준 달리 적용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구는 1인을 추가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가구와 동일한 현금급여기준 적용 (특례기준 폐지)

- 근로능력자²⁰⁾에 대하여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 최초 거주지 전입후(7월~3년) 해당기간 만료 후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단, 의료급여는 5년.

“최저생활수급 혜택의 하비율을 수급한 때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수료 후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급기간 동안 가구원 수의 변동, 재산, 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본인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5년 이내라도 매년 실시되는 재조사에서 최저생계비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언제라도 혜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고 허위나 부당하게 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받았던 급여를 다시 반납하여야 합니다.(보장비용 징수)

20)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근로무능력자는 18세미만, 65세이상, 임신부, 1급~4급 장애인

가족관계등록

59) 제 3분에서 알려주셔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걱정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는데도 어떤 절차를 지지될까요?

법원에서 개명허가(이름을 고치는 허락)를 받아 이름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명자료에 북한이탈주민임을 밝히고 본인 및 가족의 신변상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허가를 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자는 1개월 내 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60) 조선족 발원국과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원 수수료 후에 어떻게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나요?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하나원 수수료 후에 출생신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관서(광역시는 구청, 그 외 지역은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중국에서 정식 혼인한 경우는 어머니 또는 기타 출생 신고 의무자가 분만관련 증명서 또는 중국기관 발행 증서등본(증명 등사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채 출생한 경우라면 아버지를 표시할 수 없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출생 신고 시에는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혹은 인우보증인²⁾ 2명이 필요합니다.

혼인(국제결혼 포함)

61.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에 가서 국제결혼을 하고 싶을 수 있는지요?

물론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혼인 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혹은 귀국 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62.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정착금, 자립금, 집 등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이 된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착금지급, 취업보호, 주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여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하였을 경우에는 정착금 등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63. 처음 방문에 조선족일지라도 하루 빨리 방문에 따라고 외국 방문과 함께 살고 싶어요. 국제결혼에 가능한가요? 고려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하나원 수료 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는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물론 국제결혼이 가능하고 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예규 650호)에 의해 처리됩니다.

예컨대 한·중간 국제결혼은 다른 외국인과의 결혼과 동일하나 다른 점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공판실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조선족과 결혼하려면 조선족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중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중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 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62) 남한사람과 실혼을 하는 외국인(남편) 실 등에 자국민이요?

지원됩니다. 다만 주택에 있어서는 남한출신 배우자의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주택알선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자택을 소유하고 있고 수료 후 그 집에 가서 살게 된다면 굳이 임대주택을 알선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65) 조선족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오래고 할나대 아이는 중국국적의
로 호적에 이미 넣습대대 할남으로 데리고 오래고 할 성유 어떻게
하어야 하는지요?**

중국호적에 올라있는 아이는 이미 중국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따로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6) 북한에게 세운을 하지 않은 양래에서 남한에게 새로음 배우자를
만남서 재결합 하려고 할나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003년 3월 이후에 만들어진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혼인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해 줄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예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는 중혼금지규정²²⁾에 따라 법적으로는 재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2006년 12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2(이혼의특례) 조항이 만들어져 북한에 배우자를 둔 북한이탈주민들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 등)와 함께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이혼신청을 해야 합니다.

**67) 실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나대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또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혼인신고는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자

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인우보증에 의한 출생증명서 또는 유전자 감정에 의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착지원금

※ 2007년 이후 입주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가?

정착지원금은 ① 기본금(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② 가산금(연령, 한부모아동 보호, 장애, 장기치료) ③ 장려금(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④ 주거지원금 ⑤ 지방거주장려금(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만원)

세대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1인	300	300	1,300	1,900
2인	400	700	1,700	2,800
3인	500	1,000	1,700	3,200
4인	600	1,300	1,700	3,600
지급시기	수료일	수료 후 3개월 후 부터 3개월 단위 로 3회 분할지급	임대보증금은 정 부에서 임대기관 에 납부, 잔액은 5년 후 북한이탈 주민에게 지급	

* 지방거주장려금 : “가”지역(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은 미대상, “나”지역(“가”지역 제외 광역시)은 주거지원금의 10% “다”지역(기타 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를 수료 2년 후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지급

지급 예) 2010년 4월 16일 사회진출 1인 세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 수료일에 300만원, 2010년 7월, 10월, 2011년 1월 말일에 분할지급금 각 100만원씩 지급
- 임대보증금은 본인의 주거지원금에서 미리 임대기관(대한주택공사 등)에 납부

하고 잔액은 5년 후 지급

- 지방거주장려금은 2012년 4월 말일에 "나"지역은 130만원, "다"지역은 260만원을 지급

가산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비고
연령가산금	만 60세 이상	720(개인당)	보호결정일 당시
한부모아동보호가산금	만 12세 이하의 편부모	360(세대당)	
장애가산금	장애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6급은 제외
장기치료가산금	중증질병으로 연속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최대 9개월 720만원

* 가산금은 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후 거주지보호기간까지 지급(16회에 걸쳐 분할지급)

정착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구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이상	120만원	120시간 추가시마다 20만원 증액
	총 620시간 이상	140만원	
	총 740시간 이상	160만원	
	총 860시간 이상	180만원	
	총 980시간 이상	200만원	
	총 1100시간 이상	220만원	
	총 1220시간 이상	240만원	
	1년 과정, 우선선종 직종 수료		추가지급(200만원)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관련 자격증	200만원	
취업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근무	200만원	
	1년차	55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650만원	

69) 가산금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대요?

가산금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연령, 한부모아동보호가산금은 보호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나원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회진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장애, 장기치료가산금 등 2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68번 답변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신청서류
장애가산금	1. 가산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3. 복지카드 사본 4. 주민등록증 사본 5. 주민등록등본 1통 6. 통장사본
장기치료가산금	1. 가산금 지급신청서 2. 입원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 1통 5. 통장사본

- * 장애가산금은 장애등급(1급~5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장기치료가산금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특례에관한기준”에 의한 중증질병자로 한정
- * 가산금 지급신청서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접속 후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인도지원 → 가산금지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70) 하반기 수료 후 특향이탈주민과 결혼하는 정착지원금 지원에 달라지게 있는 지원?

국내 입국 후 신상의 변동에 관한 사항(결혼, 이혼 등)은 정착금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착금 지급은 보호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추후 합동신문센터 조사시 허위진술이나, 범법행위(예 : 폭언, 업무방해)를 한 경우에는 정착지원금 조정지침에 따라 보호결정 이후에도 정착지원금을 조정(감액)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거주지

71 영구 임대주택과 국민 임대주택은 무엇에 다른지요?

임대주택은 누가 그 집(아파트)을 지었느냐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영임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임대기간이 50년 정도 되나, 오래 전에 지어진 주택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 정도이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임대주택은 대다수가 국민임대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근 땅값과 건축자재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건설 원가를 임대료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영구임대는 국민임대보다 오래된 집이 많고, 실제면적이 같더라도 국민임대가 실제 면적이 넓게 나옵니다.

72 임대주택 세금은 언제까지 얼마인가?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기간인 5년입니다.

그 이후는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계속 재계약해서 살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영구임대 아파트가 부족하여 국민임대 아파트가 주로 알선되며, 국민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됩니다.

73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는 있는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그 지역의 토지가격, 건축비용, 건립연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전국 임대주택 임대료 자료는 매우 방대하며, 매년 달라집니다.

최근에 새롭게 지어지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격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조정되어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높습니다.

74. 하나원 수료 이후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을 하여 생활하락까지 하여 세제 및 상유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원 수료 이후 결혼이나 이혼이 주택알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임대주택은 하나원에 있는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이후 결혼과 이혼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알선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호결정 당시는 두 사람이 각각 단독 결정이 되었으나, 주택알선 시점에서 한 명이 포기를 하고 같이 한 주택에 살기로 하고 수료하였는데 사회에 나가서 헤어지게 될 경우에도 추가로 주택알선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중 무주택세대(결혼, 이혼을 하여 신규주택이 필요한 경우, 보호기간내 30세가 넘는 경우 등)는 국민임대주택(18평 이하) 입주자격을 갖고 있어 대한주택공사 등에 입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 주택을 포기·반납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주택을 다시 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을 포기·반납한 후에는 하나원이나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주택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서울시의 경우는 SH공사)에 임대주택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76. 자기주택 전세 월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자기주택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권리)이 있는 것이고, 전세와 월세는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전세는 집을 빌리는 요금을 한번에 지급하며 이는 월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듭니다. 월세는 집을 빌리는 요금을 일부는 목돈(보증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매월 사용료로 내는 것입니다(보통 은행이자보다 약간 비쌉니다).

전세는 처음에 지불하였던 목돈(전세금)을 이사 갈 때 모두 돌려받고, 월세는 보증금만 돌려받습니다.

77) 임대주택에서 나와 투한이탈주민이 없는 지역에 살고 싶습니까 스스로 돈을 털어서 전세로 집에 들어가려던 얼마 상도가 필요한지요?

지역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여러 가지로 결정되지만 지역의 문화수준, 교통, 학교, 시설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서울 강남지역의 18평 규모의 아파트 전세금은 보통 1억 5천~2억원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1억원 정도면 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78) 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요?

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싼 가격에 주택에 입주를 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79) 식당을 운영하고자 할때 잡세는 어느 정도이며 공간에 따른 세금, 위생비 등은 얼마입니까? 주택과 가게를 임대하는 돈에 비할만한지요?

식당을 운영하려면 먼저 영업장(가게 또는 점포, 이는 살 수도 있고 임대해도 됨)을 얻어야 하고, 필요한 집기(집안 기물)와 재료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때 가게 또는 점포의 가격은 보통 임대료와 권리금, 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주택을 빌려 음식점을 하게 되더라도 관청에 영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에 내는 세금, 위생비 또한 영업장의 규모와 소득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80) 상가(영업장)를 얻을 때 보증금, 월세는 대 무엇일까요?

주택을 얻을 때 말하는 보증금, 월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외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 등 점포의 무형의 가치를 인정해서 이전의 임차인에게 나중의 임차인이 주는 대가입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

지는 않습니다만, 또 원래 권리금 없이 영업장을 빌려 영업을 잘 해서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때 다음에 임차하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기도 합니다.

**❖ 거주지를 배정 받았지만 가서 살아보니 다른 곳으로 이사와고 싶어요
#월 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년 1월 이후 입국자부터는 국민임대주택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세 대는 대한주택공사의 공고 내역을 파악하여 본인이 희망지역을 선택하고, 신청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 신청절차에 따라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역 보는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lh.or.kr>) → 입주계획, 입주안내 참조

**❖ 거주지 배정을 받은 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장기전 생활할
상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주지 배정(주택알선)을 받은 후 임대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우선 배정권²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거주지를 배정 받은 곳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곳에서 산다면 월임대료, 관리비 등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한 한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배정된 거주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인 불이익(벌을 주거나 손해가 있게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배정받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관리주체(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의 내규에 따라 계약해지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한에서는 어디에 가면 제일 잘 살 수 있나요?

교육생중에는 서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과 잘 사는 것은 서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못사는 사람도 제일 많은 곳입니다. 어느 지역보다는 얼마나 성실히 생활하느냐가 잘 사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25) 우선 배정권이란 북한이탈주민이 영세민보다 주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함.

34.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 정도가 서울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지요?

서울 지역에는 북한이탈주민 5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약 67%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임시직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지원비 수급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산다고 하여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5.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여 선택코 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이 수도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이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이나 호기심으로 이주하는 것보다는 거주지가 배정된 지역에서 살면서 조금씩 다른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주 여부를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원칙(진학, 취업 등)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을 반납하고 서울로 온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을 다시 배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고 : 서울과 지방 차이

서울은 문화, 교육, 금융, 교통 등 서비스 측면에서 기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리하고, 지방은 인정을 더 느낄수 있다는 점, 깨끗한 환경, 거주 장려금 지급, 작은 생활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방 거주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2년 이상 거주) 지방 거주 장려금이 나옵니다.

86. 하나원 수료 후 5년 동안 거주 지역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수료 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지에서 5년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수료 후 해야할 일**87. 하나원을 다녔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1) 주민등록 신고**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규 등록한 후 주민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 관련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전화 : 031-670-9326)

2) 의료급여 신청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최초 거주지에서 신규 등록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신규 등록 받은 날로부터 의료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처리는 20일 정도 소요되며, 가족, 재산상태, 경제력에 대한 일정한 조사를 하여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합니다.

* 관련문의 : 하나원 관리후생과(전화 : 031-670-9336)

3) 생계비 지급 신청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장애인 등록증발급(해당자에 한함)

-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방문
 - * 사진 2×3cm 2장, 주민등록증 소지
- 장애인증 발급 신청서 서류작성
- 장애인증 발급 서류를 받아서 병원방문
-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 방문(진단서 2부 필요)
 - * 1부는 장애인증 발급용, 1부는 추가가산금 신청용
- 장애인 등급에 따라 하나원에 추가가산금 신청
 - * 관련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전화 : 031-670-9350 전송 : 031-672-9591)

※ 하마일 슈류 류 지역에 마가서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다음은 임대주택에 도착한 후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1) 아파트 입주 절차

-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²⁶⁾을 지참하고 서울의 경우 SH개발공사에 지방의 경우 주택공사 각 지사에 가서 임대계약(정착 도우미가 도와 줌)
-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가면 본인 호실의 열쇠를 내어 줌
 - * 관련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전화 : 031-670-9327)

2) 아파트관리사무소(또는 각 동의 수위실)

-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의 신고

3) 전화신청

- 일반전화는 국번없이 100번으로, 휴대전화는 각 대리점에서 신청

4) 벽지·장판을 교체해야 할 경우

- 114에 문의하거나 전화번호부를 보고 지역의 지물포²⁷⁾, 실내장식, 인테리어 장식²⁸⁾ 업체 등에 문의

행정기관의 기능

89) 주민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북한의 구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이 남한의 주민센터(군지역은 읍·면사무소)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 정정²⁹⁾ 신고
- 전입신고(이사 왔을 때)
- 장애인 등록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 등
- 주민등록 신규등록 및 발급
- 주민등록 재등록, 말소신고
- 인감 신고

90) 시청·군청·구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시청·군청·구청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의 상위 행정기관으로 병역, 세금징수, 건축허가, 요식업 등 사업신청과 등록, 보건소 운영, 부동산취득세나 차량취득세(새로 집이나 땅, 자동차 등을 구입하였을 경우 일정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한 후 등록할 수 있음), 환경위생 업무, 취업안내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27) 지물포란 종이붙이를 따는 가게를 뜻함.
 28) 인테리어 장식이란 실내 장식을 뜻함.
 29) 정정이란 잘못을 고쳐 바로 잡음을 뜻함.

9.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시·군·구청 단위로 교육행정을 맡아 보는 관청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검정고시³⁰⁾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거주지의 해당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관련(성적, 합격)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로 전학 및 입학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를 추천 배정하여 통보해 주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후 중·고등학교로 편입학할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학력확인서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해당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면 편입학이 결정됩니다.

배마당 · 건강관리



1. 의료지원 혜택 및 주의사항
2. 건강진단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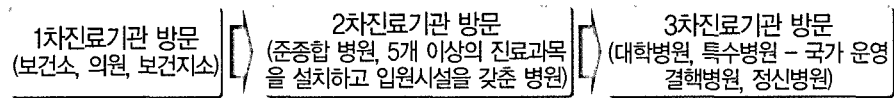
의료지원 혜택 및 주의사항

92. 병원에 갈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있따된 무엇일까요?

병원방문시와, 진료 후 약을 타기 위해 약국에 갈 때는 꼭 의료급여증(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증명서)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정부의 의료급여 지원³¹⁾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단계별 진료를 알아야만 합니다.

▶ 단계별 진료



다음 단계의 진료 시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참고

의료기관은 크게 1차,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는 병원크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은 대부분 개인이 개업을 하고 있는 ○○의원 형태이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도 대표적인 1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 의료기관보다 2차 병원이 병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간단한 감기증상으로 3차 병원을 선택하게 되면 1차병원과 똑같은 치료를 받을지라도 3차 병원의 진료비는 2~3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병에 대해서는 1차 병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93. 수료 후에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100%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하는지요?

의료급여법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의료급여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병원진료 시 건강보험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100% 급여 혜택을 받아, 돈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습니다. 단, 보험이 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

31) 의료급여 지원이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보충해 주는 것을 뜻함.

94.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건강보험의 범위를 상세하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복통으로 병원진료시 복부초음파를 실시했을 경우 병원진료비, 약값, 단순 엑스레이 촬영분은 보험의 혜택을 받아 돈을 내지 않지만 초음파비용은 비보험종목으로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

건강보험 제외 종목 - 특수검사(초음파, MRI촬영), 치과보철, 성형수술, 사건사고관련 병원 방문시,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등

95. 양이 많아져 사회에 바깥에 병원생활을 해야 할때 '병원생활을 오래할 경우(입원자력) 어떻게 하나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입원 시 의료보험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없이 입원치료를 받게 되지만 입원기간 동안 비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합니다(본인부담의 범위 : 상급병실 이용시, 특수 검사비, 선택진료비 등). 입원 일수는 제한이 없으나 입원을 해서 적합한 진단이 나오는 경우에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6. 의료급여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료급여증은 의료급여 수급권대상자에 대해 발급되는 증명서로 하나원 수수료 최초거주지에서 신규 등록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신규등록 받는 날로부터 의료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매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재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의 범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1종에서 의료급여2종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1종은 의료보험범위 진료 시 100% 국가부담, 의료급여2종은 진료비 30% 본인 부담)

97.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 모두 병원운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합니다.

즉, 병원에서 진료를 본 후 진료비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98.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죠?

보건소는 1차진료 기관으로 시, 군, 구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및 전염병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면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예, 알코올 및 약물중독, 우울, 불안장애,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 관리 등)

건강진단 및 기타

99) 취업을 할 때는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냐면데 하나원에서 했던 검사 하고는 다른 것엔가요?

회사에 취업할 때 건강검진은 필수적입니다. 검진항목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병원에서 혈액채취,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력검사, 혈압측정, 키, 몸무게 측정 등을 합니다. 하나원에서 했던 검사와 유사합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100) 저능 감염된 간염(B형 간염) 보건자가 일반과 사회에 나가면 음식섭취를 하고 싶으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B형 간염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B형 간염 환자들은 취업, 결혼,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B형 간염의 주된 전염 경로는 B형 간염 감염자인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직감염(유전적으로 직접 병을 물려 받는 것), 성관계나 혈액을 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즉 B형 간염 환자와 함께 음식을 먹거나 식기를 공동으로 사용해도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2000년 10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B형 간염 환자는 병을 앓고 있더라도 취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 사무직은 물론이고 보건증이 필요한 요식업소나 위생업소를 비롯해 음식물을 직접 다루는 조리사로 근무하는 데에도 법적 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101) 북한에서 의학유림에게 공부를 하았습니까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남한에서 의료행위(의사로서 일함)를 할 수 없을까요?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면, 적절한 검증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만 인정된다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사고시나 한의사고시³³⁾, 치과 의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위에 나열한 국가고시에 응하여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2) 보건자란 병균이 몸에 있는 사람을 뜻함.

33) 한의사고시란 북한의 동의(한)의사 시험을 뜻함.

찾아보기

생활이야기

1. 지하철은 어떻게 타며, 요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6
2. 버스는 어떻게 타며, 요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8
3. 택시 형태에 따라 택시요금이 다른가요?	10
4. 기차의 종류와 요금이 궁금합니다.	11
5. 기차를 탈 때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요?	11
6. 비행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2
7. 휴대폰 사용요금이 밀렸을 때도 신용 불량자가 되나요?	13
8. 전봇대나 통신,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광고와 실재는 어떻게 다르며 북한이탈 주민들이 조심해서 보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3
9. 인터넷은 무엇이며, 일상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요?	14
10. 남한의 TV는 북한의 TV와 어떻게 다른지요?	14
11.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이럴 경우 어디로 가면 되나요?	16
12. 정착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
13. 남한에서의 1평은 어느 정도입니까?	17
14. 1근, 1말, 1되 등의 단위도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요?	17
15. 중국에서는 주택의 전기·물 사용료가 싼데, 한국에서의 전기료·수도료는 평균 얼마 정도인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요?	18
16. 물건을 싸게 사려면 어디에 가면 되나요?	19
17.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알려면 무얼 보면 되나요?	19
18. 중국에서는 가격 흥정을 많이 했는데, 남한에서는 왜 물건값을 깎아 주지 않는 거죠? 북한이탈주민이라서 그런 것인지요?	19
19. 할인쿠폰이 뭐죠?	20
20. 포인트 점수는 무엇입니까?	20
21. 이발값의 차이와 가격에 따른 질의 차이도 있는지요?	21
22. 공중목욕탕에 갈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요?	21
23.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에 출입할 수 있는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면 되나요? 이민은 어떤지요?	23
24. 외국에 갈 때 발급받는 여권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며,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23
25. 외국을 방문할 때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24
26. 정착 후 3~4년이 지나 일정한 자금이 축적된 후에 중국에 진출하여 한식점 운영 등을 하고 싶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4
27. 외국에 나가서 돈벌이를 할 경우에도 정착금이 나오는지, 본인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지요?	24
28. 일본에 친척이 있는데, 함께 살면서 일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25

29. 남한은 법치주의 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이 법질서를 어기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법질서를 어기게 되면 남한사람과 똑같은 제재(처벌)를 받는지요? 25
30.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26

직업 및 교육

31.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수당도 주나요? 28
32. 하나원 수료 후에 컴퓨터를 더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8
33. 하나원 수료 후 요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받으면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요? 28
34. 취업을 하고도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28
35.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9
36.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알아보아야 하나요? 29
37. 낮에는 직업훈련을 받고, 밤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9
38.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및 취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장려금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30
39.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이 있습니까? 30
40. 꼭 4대 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취직하여야만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30
41. 나이가 40대 이상인 경우에 취업이 잘되는 좋은 직업이 있습니까? 31
42. 공무원이 되고 싶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2
43. 직업전문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여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3
44. 직업학교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떻게 어디서 취업을 시켜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33
45. 자격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월 임금의 차이는 어떤지요? 33
46. 자격증을 가지면 남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4
47. 남한의 직장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34
48. 회사에 취직하여 낮에 일하고 밤에 일을 더하면 월급은 어떻게 주나요? 34
49.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기초생계비가 그대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35
50. 취업을 했는데 남한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깠보는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
51. 취직 후 야간에 대학을 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주나요? 35
52. 남한에서 자녀가 생기면 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36
53. 남한의 학교 교육 외 교육방식은 어떠하며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6
54. 남한과 북한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37
55.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37

찾아보기

정착지원제도

56. 거주지 배정 받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이사를 가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비는 어떻게 되나요?	42
57. 어떤 직업의 경우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하는지요?	42
58.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하나원을 수료한 때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43
59. 제 신분이 알려져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걱정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44
60. 조선족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에 어떻게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나요?	44
61. 북한이탈주민도 외국에 가서 국제결혼을 하고 살 수 있는지요?	45
62.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정착금, 지원금, 집 등은 어떻게 되나요?	45
63. 저는 남편이 조선족입니다. 하루빨리 남한에 데리고 와서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요.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45
64. 남한사람과 결혼을 해도 정착지원금, 집 등이 지원되나요?	46
65. 조선족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아이는 중국국적으로 호적이 이미 있습니다.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46
66. 북한에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서 재결합 하려고 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46
67.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또,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46
68. 2007.1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47
69. 가산금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49
70. 하나원 수료후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해도 정착지원금 지원이 달라지지 않는지요?	49
71. 영구 임대주택과 국민 임대주택은 무엇이 다른지요?	50
72. 임대주택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50
73.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지역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0
74. 하나원 수료 이후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을 하여 생활하다가 헤어지게 될 경우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51
75. 주택을 포기·반납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주택을 다시 받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
76. 자기주택·전세·월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51
77. 임대주택에서 나와 북한이탈주민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싶습니다.	52
78.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전세로 집에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요?	52

79. 임대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요?	52
80. 식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세는 어느 정도이며, 국가에 내는 세금, 위생비 등은 얼마입니까? 주택과 가게를 빌리는 돈이 비슷한지요?	52
81. 상가(영업집)를 얻을 때 보증금, 월세는 다 무엇인지요?	53
82. 거주지를 배정 받았지만 가서 살아보니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
83. 거주지 배정을 받은 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3
84. 남한에서는 어디에 가면 제일 잘 살 수 있나요?	54
85.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던데... 실제로 몇 % 정도가 서울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지요?	54
86. 하나원 수수료 몇 년 동안 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55
87. 하나원을 나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55
88. 하나원 수수료 후 지역에 나가서 임대 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56
89. 주민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57
90. 시청·구청·구청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57
91.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58

건강 관리

92. 병원에 갈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0
93. 수수료 후에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100%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하는지요?	60
94.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61
95. 병이 많아서 사회에 나가면 병원생활을 해야 합니다. 병원생활을 오래할 경우 (입원치료), 어떻게 하나요?	61
96. 의료급여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61
97.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2
98.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62
99. 취업을 할 때도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던데, 하나원에서 했던 검사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63
100. 저는 전염성 간염(B형 간염) 보유자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음식점을 하고 싶은 데요. 가능할까요?	63
101. 북한에서 의학부문에 공부 하였습니다.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남한에서 의료행위(의사로서 임함)를 할 수 없을까요?	63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연락처

지역	권역	단체명	서비스지역	연락처
서울 (4)	동부	한적 서울지사(관악봉사관)	송파, 강동, 강남, 서초, 관악, 동작, 성동, 광진	02-882-5210~1
	서부	가양·종합사회복지관	강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종로, 중	02-2668-8600
	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02-2690-8762
	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 성북, 중랑, 강북, 도봉, 동대문	02-948-0520
경기 (6)	동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용인, 성남, 이천, 광주, 하남, 양평, 여주	031-714-6333
	서부	덕유사회복지관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과천	032-325-2161
	서북	미지정(2/4분기 중 지정예정)	김포, 고양, 파주	
	중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안산, 군포, 의왕, 수원	031-410-6070
	남부	미지정(2/4분기 중 지정예정)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북부	한국청소년가족상담교육원	의정부, 포천, 남양주, 양주, 동두천, 구리, 가평, 연천	031-544-1154	
인천 (2)	남동	하이스회복지센터	남동, 연수	032-437-1173
	부평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 계양	032-529-8607~9
강원 (2)	동부	동해지역자활센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인제, 고성, 양양	033-535-1648
	서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춘천, 원주,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033-254-6670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 킨소사업	양구, 인제	033-762-8131~2
대전	전지역	생명사회복지관	전 지역	042-283-9191
충북	전지역	미지정(2/4분기 중 지정예정)		
충남	서북	천안쌍용종합사회 복지관	천안, 아산, 서산, 홍성, 예산, 당진	041-571-4064
	중남	자유총연맹 충남지부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041-881-6045
부산	전지역	미지정(2/4분기 중 지정예정)		
울산	전지역	미지정(2/4분기 중 지정예정)		
대구	전지역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 경산	053-356-0464
경북 (2)	동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 경주, 영천	054-256-0456
	서북	경북이주민센터	구미, 칠곡, 김천, 안동, 영주, 문경, 상주	054-444-8861~2
경남 (2)	동부	한적 경남지사(창원봉사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함안, 창녕	055-263-4100
	서부	미지정(2/4분기 중 지정예정)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광주 (2)	서부	광주진남북한이주민지원센터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062-374-4264
	북부	한적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북구, 목포(전남 북부권)	062-573-0541~4
전북	전지역	미지정(2/4분기 중 지정예정)		
전남 (1)	전지역	한적 광주·전남지사 (순천봉사관)	순천, 여수 등 남부권	061-753-3951~2
제주	전지역	미지정(2/4분기 중 지정 예정)		

거주지보호담당관 현황

지역	거 주 지 보 호 담 당 관		
	직 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특별시	행정과	02-731-6229	02-3707-8148
종로구	자치행정과	02-731-1628	02-731-0834
중구	사회복지과	02-2260-1714	02-2260-1159
용산구	자치행정과	02-710-3410	02-710-3670
성동구	자치행정과	02-2286-5142	02-2286-5903
광진구	자치행정과	02-450-7148	02-450-1562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02-2127-4385	02-3299-2615
중랑구	자치행정과	02-490-3313	02-490-3769
성북구	자치행정과	02-920-3131	02-920-3130
강북구	자치행정과	02-901-6089	02-901-6108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289-1127	02-2289-1724
노원구	자치행정과	02-2116-3133	02-950-3707
은평구	주민자치과	02-351-6306	02-351-5824
서대문구	자치행정과	02-330-1070	02-330-1413
마포구	자치행정과	02-3153-8306	02-3153-8349
양천구	자치행정과	02-2620-3091	02-2620-4416
강서구	자치행정과	02-2600-6043	02-2600-6196
구로구	자치행정과	02-860-2497	02-860-2659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6	02-2627-2275
영등포구	주민자치과	02-2670-3168	02-2670-3596
동작구	자치행정과	02-820-9125	02-820-9977
관악구	생활복지과	02-880-3437	02-880-3723
서초구	사회복지과	02-410-3811	02-424-8222
강남구	자치행정과	02-2104-1226	02-2104-2414
송파구	자치행정과	02-410-3811	02-424-8222
강동구	자치행정과	02-480-1313	02-480-1819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051-888-3191	051-888-2959
중구	여성가족과	051-600-4352	051-600-4369
서구	생활지원과	051-240-4314	051-240-4319
동구	주민생활지원과	051-440-4323	051-440-4319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1	051-419-4359
부산진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05-4333	051-605-4319
동래구	주민생활지원과	051-550-4335	051-550-4319
남구	주민지원과	051-607-4501	051-607-4319
북구	복지행정과	051-309-4332	051-309-4319
해운대구	주민평생학습지원과	051-749-4352	051-749-4129
사하구	주민생활지원과	051-220-5552	051-220-4319
금정구	주민생활지원과	051-519-4353	051-519-4319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64	051-970-4319
연제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65-4374	051-665-4319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11	051-610-4319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310-4333	051-310-4319
기장군	주민생활지원과	051-709-4365	051-709-4339

지역	거주지번호담당관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053-803-2524	053-803-2819
중 구	행정지원과	053-661-2226	053-661-2219
동 구	행정관리과	053-662-2226	053-662-2219
서 구	총무과	053-663-2227	053-663-2219
남 구	행정지원과	053-664-2223	053-664-2219
북 구	총무과	053-665-2225	053-665-2219
수성구	총무과	053-666-2221	053-666-2219
달서구	총무과	053-667-2227	053-667-2219
달성군	행정지원과	053-668-2226	053-282-7168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032-440-2403	032-440-8645
중 구	총무과	032-760-7164	032-760-7159
동 구	행정자치과	032-770-6167	032-770-6149
남 구	총무과	032-880-4126	032-880-4853
연수구	자치행정과	032-810-7103	032-810-7119
남동구	총무과	032-453-2204	032-453-2189
부평구	자치행정과	032-509-6155	032-509-7606
계양구	자치행정과	032-450-5195	032-450-5149
서 구	총무과	032-560-4515	032-560-4099
강화군	주민생활지원실	032-930-3345	032-930-3647
옹진군	자치행정과	032-899-2134	032-899-2139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062-613-2945	062-613-2948
동 구	총무과	062-608-2174	062-608-2128
서 구	총무과	062-360-7796	062-360-7318
남 구	주민생활지원과	062-650-8183	062-650-7622
북 구	주민자치과	062-510-1287	062-510-1598
광산구	총무팀	062-940-8569	062-940-8393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	042-600-2312	042-600-2319
동 구	행정지원과	042-250-1235	042-250-1308
중 구	자치행정과	042-606-6237	042-606-6189
서 구	자치지원과	042-611-6577	042-611-6549
유성구	평생학습과	042-611-2199	042-611-2378
대덕구	자치행정팀	042-608-6515	042-608-6229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052-229-2483	052-229-2479
중 구	자치행정과	052-290-0228	052-290-0599
남 구	자치민원봉사과	052-226-5475	052-226-5255
동 구	자치행정과	052-209-3214	052-209-3209
북 구	총무과	052-219-7233	052-219-7239
울주군	총무과	052-229-7132	052-229-7109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	031-850-3532	031-850-3539
수원시	자치행정과	031-228-2112	031-228-3754
성남시	자치행정과	031-729-2286	031-729-2289
고양시	자치행정과	031-8075-2446	031-8075-4955
부천시	자치행정과	032-320-2326	031-320-2720
용인시	주민생활과	031-324-3857	031-324-2209
안산시	자치행정과	031-481-2156	031-481-3222

지역	거 주 지 보 호 담 당 관		
	직 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양시	총무과	031-389-2124	031-389-2829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4224	031-590-2129
의정부시	총무과	031-828-2135	031-828-4920
평택시	자치행정과	031-659-4204	031-659-5466
시흥시	총무과	031-310-2120	031-310-2802
화성시	자치행정과	031-369-1849	031-369-1504
광명시	행정지원과	02-2680-2128	02-2680-2610
파주시	총무과	031-940-4962	031-940-4969
군포시	자치행정과	031-390-0835	031-390-0719
광주시	총무과	031-760-5621	031-760-2023
김포시	행정과	031-980-2533	031-980-2539
이천시	자치행정과	031-644-2103	031-644-2129
구리시	총무과	031-550-2102	031-550-2804
양주시	총무과	031-820-2163	031-820-2149
안성시	행정과	031-678-2174	032-678-2139
포천시	자치행정과	031-538-3103	031-538-2745
오산시	자치행정과	031-370-3125	031-370-3113
하남시	자치행정과	031-790-5543	031-790-6099
의왕시	행정지원과	031-345-2124	031-345-2797
여주군	자치행정과	031-887-2143	031-887-2463
동두천시	총무과	031-860-2121	031-860-2664
양평군	총무과	031-770-2126	031-770-2803
과천시	총무과	02-3677-2124	02-3677-2774
가평군	총무과	031-580-2116	031-580-2109
연천군	총무과	031-839-2768	031-839-2483
강원도	생활보장팀	033-249-2599	033-249-4037
춘천시	복지과	033-250-3094	033-250-3486
원주시	주민생활지원과	033-737-2613	033-737-4809
강릉시	주민생활지원과	033-640-5338	033-640-4743
동해시	주민생활지원과	033-530-2326	033-530-2828
태백시	사회복지과	033-550-3918	033-550-2929
속초시	주민생활지원과	033-639-2312	033-639-2380
삼척시	주민생활지원과	033-570-3312	033-570-3130
홍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33-430-2318	033-430-2041
횡성군	사회복지과	033-340-2096	033-340-2573
영월군	사회복지과	033-370-2858	033-370-2929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	033-330-2180	033-330-2557
정선군	주민생활지원실	033-560-2313	033-560-2588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13	033-450-5433
화천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40-2323	033-440-2454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13	033-480-2323
인제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60-2211	033-460-2219
고성군	주민생활지원실	033-680-3313	033-680-3168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11	033-670-2790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043-220-2615	043-220-2659

지역	거주지 보호 담당 관		
	직 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청주시	자치행정과	043-200-2188	043-200-2209
충주시	총무과	043-850-5126	043-850-5109
제천시	자치행정과	043-641-5462	043-641-5469
청원군	행정과	043-251-3048	043-251-3499
보은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40-3832	043-540-3809
옥천군	행정과	043-730-3124	043-730-3129
영동군	자치행정과	043-740-3155	043-740-3159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4	043-835-3209
진천군	행정과	043-539-3146	043-539-3149
괴산군	행정과	043-830-3233	043-830-3499
음성군	행정과	043-871-3808	043-871-3099
단양군	자치행정과	043-420-3232	043-420-3499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042-220-3170	042-251-2229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5	041-521-2219
공주시	행정지원실	041-840-2398	041-840-2401
보령시	총무과	041-930-3237	041-930-3666
아산시	총무과	041-540-2236	041-540-2349
서산시	자치행정과	041-660-2232	041-660-2237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238	041-730-3401
금산군	자치행정과	041-750-2336	041-750-2339
부여군	주민생활지원실	041-830-2538	041-830-2540
연기군	자치행정과	041-861-2323	041-861-2329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297	041-940-2303
홍성군	행정지원과	041-630-1304	041-630-1698
예산군	총무과	041-339-7206	041-339-7209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7	041-670-2277
당진군	총무과	041-350-3148	041-350-3179
전라북도	행정지원과	063-280-4230	063-280-2229
전주시	시민협력과	063-281-5031	063-240-0412
군산시	총무과	063-450-4238	063-450-4345
익산시	행정지원과	063-859-5734	063-859-5059
정읍시	총무과	063-530-7118	063-530-7109
남원시	총무과	063-620-6063	063-620-6704
김제시	주민복지과	063-540-3312	063-540-3466
완주군	기획관리실	063-240-4232	063-240-4412
부안군	자치행정과	063-580-4298	063-580-4565
전라남도	행정과	061-286-3327	061-286-4749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3239	061-270-3579
여수시	행정지원과	061-690-2109	061-690-8106
순천시	총무과	061-749-3197	061-749-3151
나주시	자치행정과	061-330-8257	061-330-8579
광양시	총무과	061-797-2251	061-797-2579
담양군	행정과	061-380-3166	061-380-3580
곡성군	행정지원과	061-360-8239	061-360-8579
보성군	자치행정과	061-850-5236	061-850-5579

지역	거 주 지 보 호 당 당 관		
	직 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례군	총무과	061-780-2242	061-780-2579
고흥군	주민복지과	061-830-5914	061-830-5925
화순군	행정지원과	061-379-3303	061-379-3360
장흥군	총무과	061-860-0369	061-860-0579
강진군	행정혁신팀	061-430-3473	061-230-3489
해남군	총무과	061-530-5534	061-530-5579
영암군	총무과	061-470-2233	061-470-2579
무안군	자치행정과	061-450-5233	061-453-2100
함평군	자치행정과	061-320-3240	061-320-3579
영광군	행정지원과	061-350-5235	061-350-5592
장성군	총무과	061-390-7233	061-390-7579
완도군	총무과	061-550-5233	061-550-5579
진도군	행정지원과	061-540-3119	061-540-3579
신안군	행정지원과	061-240-8236	061-240-8576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053-950-2138	053-950-2302
포항시	자치행정과	054-270-2077	054-270-2070
경주시	총무과	054-779-6091	054-779-6089
김천시	총무과	054-420-6247	054-420-6089
안동시	총무과	054-840-5085	054-840-6089
구미시	총무과	054-450-5982	054-450-6089
영주시	자치행정과	054-639-6082	054-639-6089
영천시	총무과	054-330-6056	054-330-6089
상주시	총무과	054-537-7164	054-537-6089
문경시	총무과	054-550-6088	054-550-6089
경산시	행정지원과	053-810-6706	053-810-6089
칠곡군	총무과	054-979-6085	054-979-6089
경상남도	행정과	055-211-3124	055-211-3119
창원시	행정과	055-212-2378	055-212-2369
진해시	총무과	055-548-4107	055-548-2089
마산시	행정과	055-220-2927	055-220-2919
진주시	총무과	055-749-5116	055-749-2809
통영시	총무과	055-650-4036	055-650-4099
사천시	총무과	055-831-2566	055-831-6021
김해시	총무과	055-330-3096	055-330-3079
밀양시	행정과	055-359-5085	055-359-5101
거제시	총무과	055-639-3236	055-639-3319
양산시	총무과	055-392-2164	055-392-2149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5	055-530-2299
고성군	행정과	055-670-2105	055-670-2109
남해군	행정과	055-860-3143	055-860-3737
산청군	행정과	055-970-6104	055-970-6109
거창군	행정과	055-940-3083	055-940-3109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064-710-6865	064-710-2819
제 주 시	주민생활지원과	064-728-2471	064-728-2519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064-760-2386	064-760-2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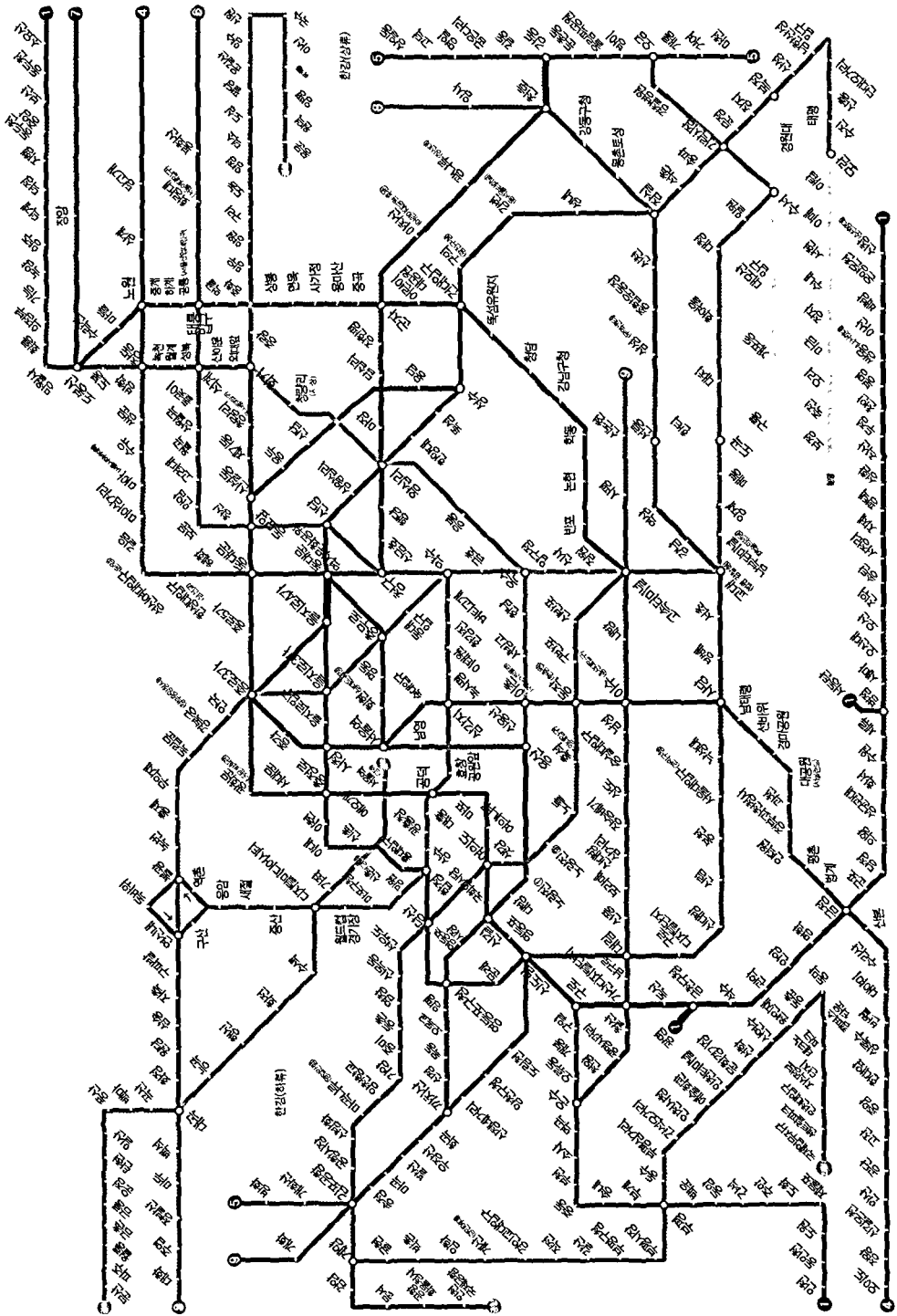
취업보호담당관 현황

연번	청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
1	서울청	서울종합	중구, 종로구, 성북구	02-2004-7083
2		서울강남종합	강남구, 서초구	02-3468-4754
3		서울동부종합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02-2142-8913
4		서울서부종합	마포구, 용산구, 노원구, 서대문구	02-2077-6071
5		서울남부종합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02-2639-2370
6		서울북부종합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02-2171-1796
7		서울관악종합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02-3282-9330
8		춘천종합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033-250-1914
9		강릉종합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033-610-1949
10		원주종합	원주시, 횡성군	033-769-0911
11		태백종합	태백시, 삼척시	033-550-8654
12		영월종합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33-371-6251
13	부산청	부산종합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영도구, 사하구	051-860-1948
14		부산동부종합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60-7112
15		부산북부종합	사상구, 북구, 강서구	051-330-9847
16		창원종합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055-239-0944
17		진해종합	진해군	055-547-6277
18		울산종합	울산광역시	052-228-1960
19		김해종합	김해시, 밀양시	055-330-6403
20		양산종합	양산시	055-379-2414
21		진주종합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하동군, 남해군)	055-760-6714
22		통영종합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055-650-1854
23	대구청	대구종합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칠도군)	053-667-6117
24		대구북부종합	서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053-605-6505
25		대구강북	북구, 칠곡군, 군위군	053-606-8046
26		포항종합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경주시	054-280-3093
27		구미종합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국가산업단지	054-440-3315
28		영주종합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상주시)	054-639-1124
29		안동종합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054-851-8064
30	경인청	경인종합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남구, 용진군	032-460-4934
31		인천북부종합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40-5819
32		수원종합	수원시, 화성시	031-231-7812
33		평택종합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646-1223
34		의정부종합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철원군, (구리시, 남양주시)	031-828-0929
35		고양종합	고양시, 파주시	031-920-3913
36		부천종합	부천시, 김포시	032-320-8904
37		안양종합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	031-463-0751
38		용인종합	용인시	031-289-2245
39		안산종합	안산시, 시흥시	031-412-6926
40		광명종합	광명시	02-2680-1511
41		성남종합	성남시, 이천시, 여주군, (평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739-3125
42	광주청	광주종합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곡성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구례군	062-609-8576
43		전주종합	전주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정읍시, 남원시, 순창군, 인실군)	063-270-9138
44		익산종합	익산시, 김제시	063-840-6546
45		군산종합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50-0621
46		목포종합	목포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061-280-0527
47		순천종합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광양시	061-720-9117
48		여수센터	여수시	061-650-0148
49		대전청	대전종합	대전시, 금산군
50	공주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041-854-8219
51	청주종합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6763
52	천안종합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당진군	041-620-7483
53	충주종합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043-850-4010
54	보령종합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서산시), 태안군	041-930-6229
55	서산		서산	041-661-5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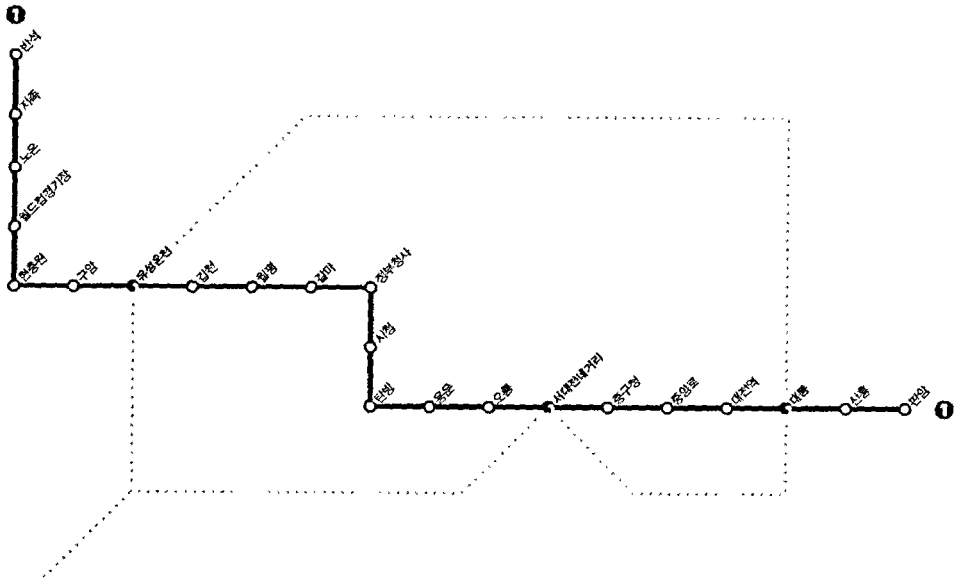
주요 전화번호 안내

종합병원 응급전화		[지 방]			
[서 울]		(경기) 국립암센터	1588-811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053-250-7114
북한이탈주민 클센터	1566-225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	영남대학교의료원	053-623-8001
국립의료원	1588-1755, 02-2260-7114	분당차병원	031-780-5000	파티아병원	053-940-7114
서울대학교병원	1588-5700	수원아주대학교병원	031-219-5114	(강원) 원주기독병원	033-741-0114
서울성모병원	1588-1511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114	강릉아산병원	033-610-3114
성모병원	02-3779-1114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000	한림대춘천성심병원	033-240-5000
삼성서울병원	1599-3114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114	(전북·전주) 전북대학교병원	063-250-2100
강북삼성병원	1599-8114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	031-639-4800	정음아산병원	063-530-6000
경희의료원	02-9588-114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031-674-7520	전주예수병원	063-230-8114
고대안암병원	1577-0083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14	군산의료원	063-472-5114
고대구로병원	02-2626-1114	관동대일산명지병원	031-810-5114	익산원광대학교병원	063-859-1114
대림성모병원	02-8299-000	한양대구리병원	031-560-2114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064-750-1234
서울보라매병원	1577-0075, 02-870-2114	일산병원	031-900-0114	통 일 부	
서울아산병원	1688-7575	일산백병원	031-910-7114	하나원 대표전화	(031)670-9300
서울 적십자병원	02-2002-8000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032-890-2114	주택관리	(031)670-9327-8
서울보훈병원	02-2225-1111	가천의대길병원	1577-2299	호적·주민등록관련	(031)670-9326
국립경찰병원	02-3400-1114	인천기독병원	032-762-7831-45	정착금지급관련	(031)670-9350
건국대학교병원	02-2030-5114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00	정착지원과	(02)2100-5983, 5985
소화이동병원	02-705-9000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042-280-7114	이산가족과	(02)2100-5883~4
순천향대학교병원	02-709-9114	대전율지대학교병원	042-611-3000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1599-1004	대전성모병원	1577-0888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1599-6114	(충남) 건양대학교병원	1577-3330		
원자력병원	02-9702-114	국립공주병원	041-850-5700		
울지병원	02-970-8000	순천향대 천안병원	041-570-2114		
이화대학교 목동병원	02-2650-5114	천안단국대학교병원	1588-0063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043-269-6114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02-2270-0114	간국대학교 충주병원	043-840-8200		
중앙대학교용산병원	02-748-9900	(부산) (재)그린더스	051-668-8001		
중앙대학교후석동병원	02-6299-1114	부산대학교병원	051-254-0171		
서울의료원	02-3430-0200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051-890-6114		
차병원	02-3468-3000	동아대학교의료원	051-240-2000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고신대학교복음병원	051-990-6114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02-2224-2114	부산광역시 의료원	051-507-3000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02-2639-5114	부산성모병원	051-9337-114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02-2290-8114	(전남·광주) 전남대학교병원	062-220-5114		
(사)누가신교회	02-2264-0404	조선대학교병원	062-220-3114		
한국심장재단	02-414-5321-3	광주기독병원	062-650-5000		
		(대구) 대구광역시 의료원	053-560-7575		
		경북대학교병원	053-422-1141		
		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416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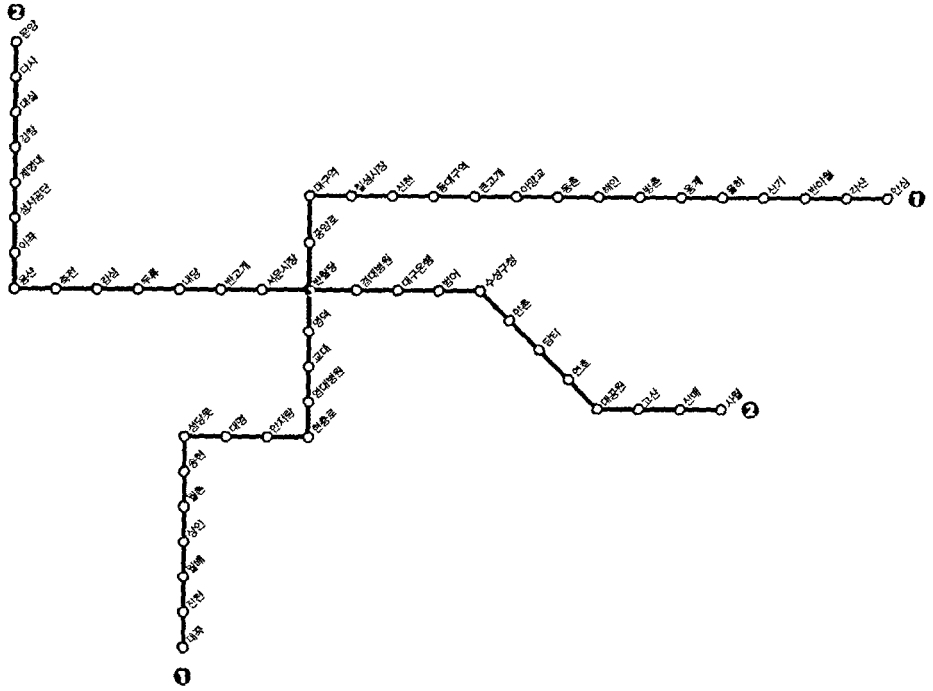
지하철 노선도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대전광역시 지하철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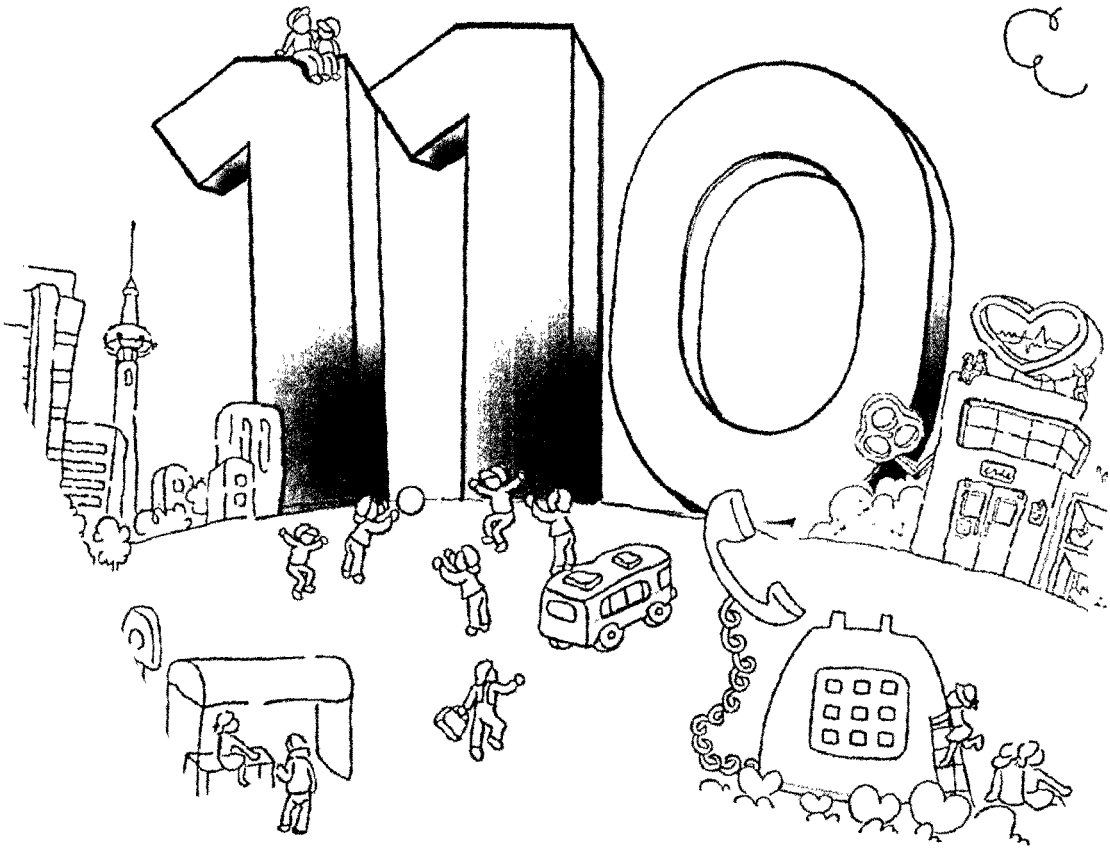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지하철 노선도

110 call & d
정부민

정부대표전화 110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행정기관 업무를 상담안내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10은 정부대표전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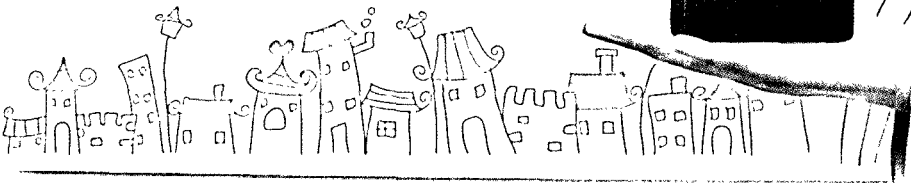
110콜센터는 범정부 HUB 콜센터로서
국민이 하나의 전화번호(국번 없이 110)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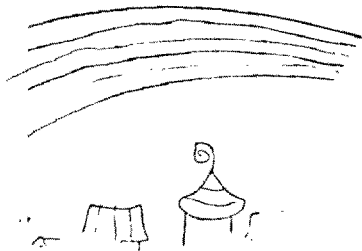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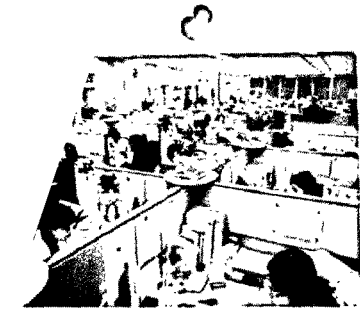
110 콜센터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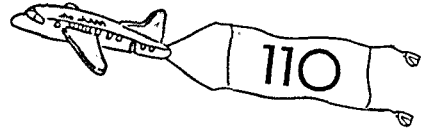
110 콜센터는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ARS)을 거치지 않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110상담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HISTORY

- '03.2~'07.4 정부 행정 개혁 및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확정 및 구축
- 2007. 5.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개소 및 전국서비스 개시
- 2007.12~현재 정부기관 전문상담 대행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 통계청, 국세청 등)
- 2008. 5 주간 운영체제에서 주야간 체제로 확대
- 2009. 1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신고센터 통합
- 2009. 4 초등학교 교과서에 110 소개문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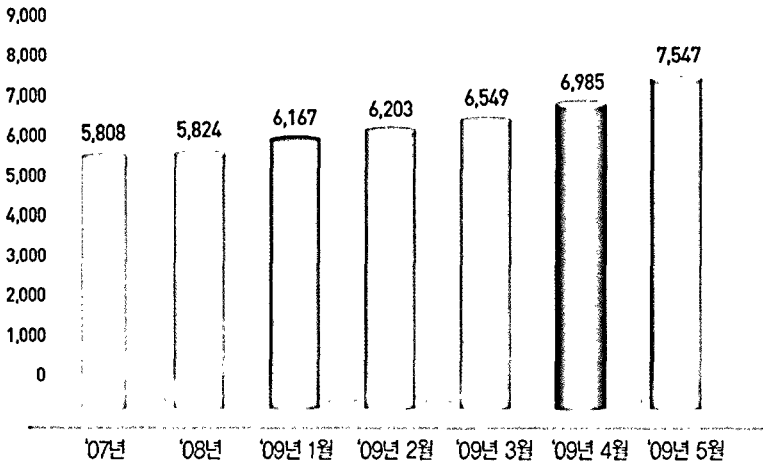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대표전화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소통창구입니다.**
 -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10콜센터를 생계침해 전문상담창구로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통합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 대표콜센터입니다.**
 - 정부 차원의 통합민원 창구로서 331개 정부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계하였습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60만여 건의 전문상담 DB를 구축하였습니다.
 - 110콜센터에서 자체 종결 처리한 상담이 전체 상담 중 93%입니다.
- 정부콜센터 통합으로 국민편의를 제공합니다.**
 - 행정안전부, 통계청, 국세청 등의 전문상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기관 대표 민원전화번호 체계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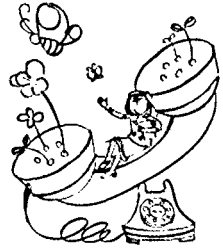
110콜센터 일평균 상담전화량





행정기관의 민원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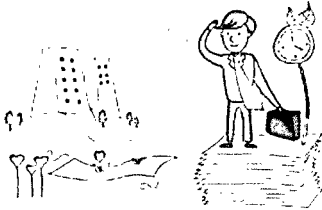
110으로 전화하세요~



☛ 정부대표전화 110 상담·안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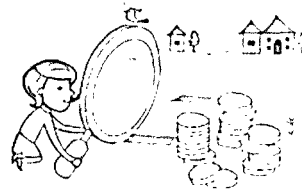
▶ 일반 민원 상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새 주소, 여권,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학교행정, 교육, 병무, 보훈, 건설공사,
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민원 처리 기관 안내,
정부통계 등 모든 행정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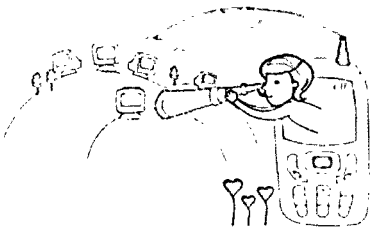
▶ 세금, 공공요금 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주민세,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벌금, 과태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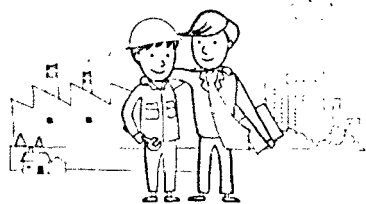
▶ 사회안전망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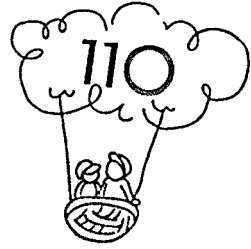
일자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채무 상담 등



▶ 생계침해 신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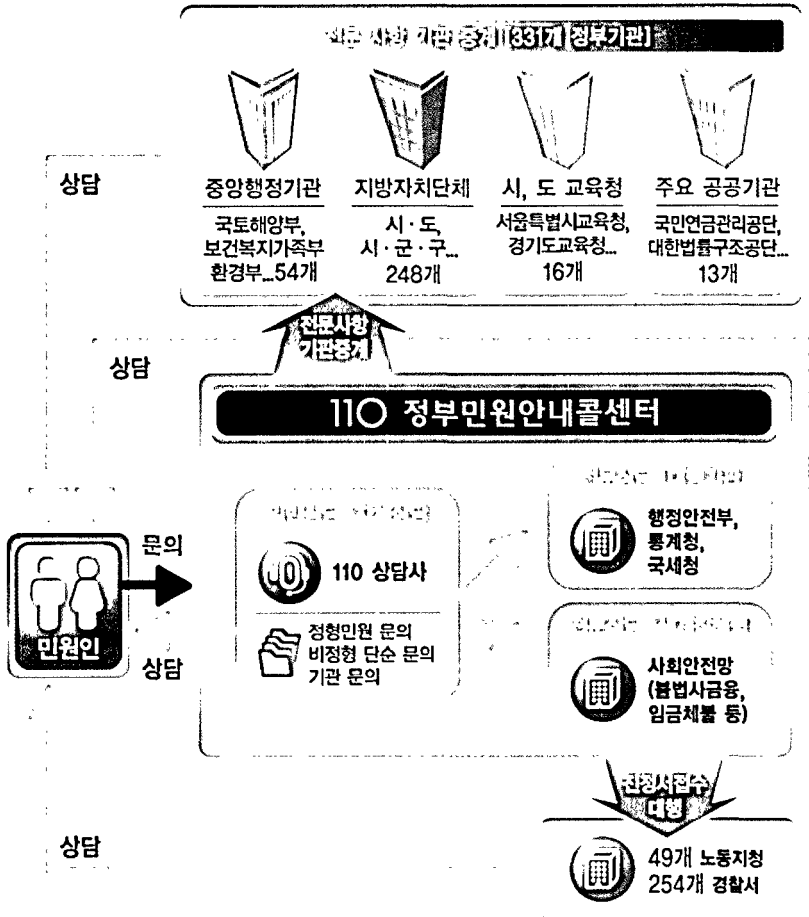
불법 사금융, 임금체불, 과다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금품 착취,
불공정 계약, 성 피해, 환경 피해,
보이스피싱, 교통불편 신고 등





110콜센터 상담 프로세스

- 일반민원의 경우
전문 상담사가 평균 2분30초 안에 해답을 드립니다.
- 전문민원의 경우
핫라인이 연결된 해당 정부기관 담당자에게 상담 내용을 연결하여 드립니다.





Happy Call, Call Back, 문자상담 서비스안내



전화민원 "Happy Call" 서비스



기관에 연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드립니다.

예약민원 "Call Back" 서비스

심야 및 공휴일, 기관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의하신 경우 근무일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민원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문자상담 서비스



민원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문의 내용을 보내면 상담사가 문자메세지로 신속하게 문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110 이용안내



민원이 있으십니까?
정부 정책이 궁금하십니까?
작은일에서 큰일까지 110번이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 ▶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 국번 없이 110
- ▶ 외국인 상담 :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언어로 상담 가능
- ▶ 해외에서도 전화하세요 : 82-2-2012-9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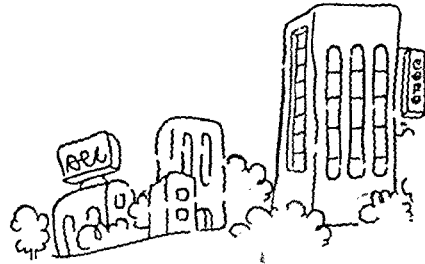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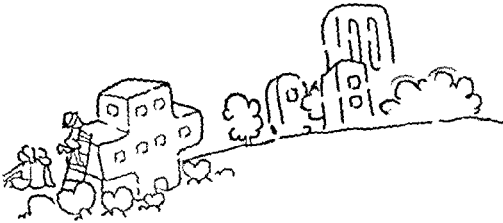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 밤 9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정부대표전화

110



국민권익위원회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미군동 257)

북한이탈주민의 궁금증 100가지

새 삶을 위한 생활안내

발행처 통일부 하나원 교육기획과

발행일 2010년 3월

인쇄처 진명인쇄공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22-1 / (02)2279-1470
